2022.8.9.

국회예산정책처 I 사업평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Analysis on the Local Government-led Youth Employment Program

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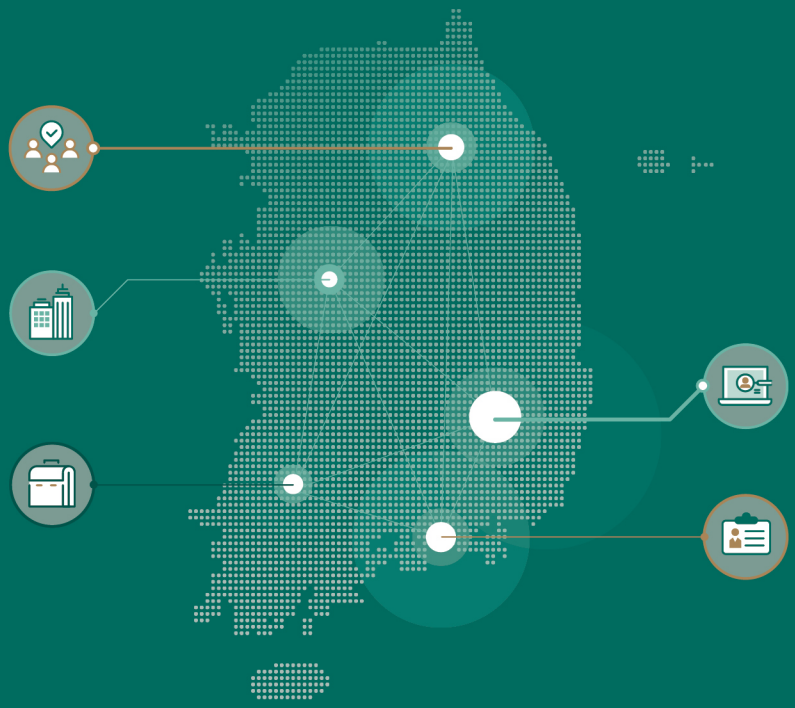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작 성 | 안수지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 원 | 양희열 사회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02) 6788-3773 | sa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2022. 8.

최근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비수도권 인구의 지속적 이탈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저하, 지역소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2070년까지의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비수도권 인구의 이탈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으로, 특히 지방의 고용률은 대도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지역 현장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기업에서 일할 청년이 없고, 청년은 근로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등 청년과 일자리가 함께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한시사업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승계함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07.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례

CONTENTS

요 약 / 1

Ⅰ. 개 요 / 1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1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 3

Ⅱ. 정책 환경 및 현황 / 5

1. 정책 환경 ····· 5
   가. 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 ····· 5
   나. 지역 청년일자리 현황 ····· 11
2. 정책 현황 ····· 17
   가. 청년 일자리 정책 및 주요사업 ····· 17
   나. 지역인구감소 대응 정책 ····· 23

Ⅲ.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 43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 43
   가. 추진 배경 ····· 43
   나. 추진 경과 ····· 44
   다. 사업 내용 ····· 46
   라. 사업 추진 체계 ····· 49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 52
   가.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 ····· 52
   나. 사업비 집행 현황 ····· 57

Ⅳ. 주요 쟁점 분석 / 66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설계 및 합목적성 ····· 66
가. 사업성과 관리체계 개선 필요 ····· 66
나. 지자체 자율지원 사항에 대한 추진체계 개선 필요 ····· 69
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계속 추진 적정성 재검토 필요 ····· 80
라. 일자리 사업유형 재분류 필요 ····· 89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체계의 효율성 ····· 93
가. 지자체와 위탁수행기관의 유기적 업무 협력과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운영 필요 ··· 93
나. 사업 참여자 및 기업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99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 107
가. 청년의 지역 정주 효과에 대한 관리 필요 ····· 107
나. 사업장 지도·점검사항 구체화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환류 프로세스 마련 필요 ···· 111
다. 고용 유지율(중도 탈락률)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116

Ⅴ. 결론 및 시사점 / 123

참고문헌 / 131

요 약

Ⅰ. 개요

1. 분석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2020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였음

○ 비수도권 인구의 지속적 이탈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청년층의 고용률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높고 도 지역은 낮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

○ 청년 고용률은 서울, 대전, 인천, 경기, 세종 등에서 높고 전남, 경북 등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의 청년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단기 일자리에 그치거나 취업 연계의 어려움, 지역의 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4년간 추진되었던 동 사업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 분석 대상은 2018~2021년간 추진하였던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며, 사업의 설계와 합목적성,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사업의 전반을 분석·평가하고자 함

❑ 분석 방법으로는 문헌 검토, 법령 검토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분석·검토함

○ 사업계획서 및 시행지침, 부처의 제출자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고, 일부 분석에서는 타 부처 재정지원 사업 관련 자료, 통계자료, 기타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함

Ⅱ. 정책 환경 및 현황

1. 정책 환경

가. 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

❑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7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이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

❑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이탈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감소의 충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 고시하여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출산율을 저하시켜 지방인구의 자연감소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청년의 지역 이동은 중요한 지표

❑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대학 진학과 취업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지리적 근접성 및 지역의 산업구조는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성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과 노동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나. 지역 청년 일자리 현황

❑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43.5%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47.9%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전국 20~29세의 고용률은 55.7%~58.2% 사이에서 등락하였음

- ◦ 지역별 고용률의 차이는 존재하였는데, 2011년 이후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남 등에서 고용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크게 나타남
- ◦ 2021년 기준(20~29세) 고용률은 전국 57.4%, 지역별로는 서울시(61.6%), 인천시(61.6%), 충청북도(59.9%), 경기도(59.3%), 대전광역시(56.7%) 등이 높았고, 전라북도(49.0%), 광주(49.6%), 세종(49.6%) 등이 낮은 편임

❑ 청년층의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전일제 일자리의 비중이 줄어 첫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음

- ◦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율은 2012년 33.2%에서 2021년 38.5%, 1년 이상 비율은 2012년 24%에서 2021년 26.7%로 나타남
- ◦ 첫 일자리에서 전일제 일자리 종사 비율 2012년 85%에서 2021년 77%로 하락

2. 정책 현황

가. 청년 일자리 정책 및 주요사업

❑ 정부는 청년 고용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거의 매년 수립해 오고 있으며,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거시적인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 현황(2018~2021)]

일자	대책	내용
2018.3.15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합동 6개 주제: 청년일자리 대책(기재부), 청년고용 촉진방안(고용노동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교육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중기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행안부)**,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기재부)
2019.7.1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청년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분야 추가과제
2021.8.26.	청년특별대책	코로나 위기 극복(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구직수당), 청년세대 내부 격차해소(국가장학금, 등록금, 월세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미래도약 지원(창업활성화, 청약통장, 장병사회복귀금)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1) 및「청년특별대책」보도자료(2021.8.2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그 중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21년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 일자리(부처합동),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부처합동),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기획재정부) 등이 있으며, 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공공일자리 지원, 직무체험 기회 등을 지원함

나. 지역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구감소문제를 저출산에 따른 자연인구감소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전국의 총인구 및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입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인구감소문제가 저출산이 아닌 사회적 인구이동, 특히 청년층의 유출에 기인함에 따라 최근 입법은 지역인구감소 문제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예산 기준 52개 내역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되며 사업규모는 총 2조 6,295억원에 달함

○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인구감소 대응 사업 현황에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사업, 지방소멸대응사업,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확충 사업 등이 있음

❑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곳)을 지정하고 2022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함)을 도입,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Ⅲ.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개요

가. 추진 배경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코붐 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에 태어난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가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위기가 심화될 것을 예상,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됨

- ○ 그간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 일률적 사업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여건과 지역고용시장의 미스매치 원인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
- ○ 정부는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2017.12.) 등을 통해 지자체 일자리사업을 발굴, 사업의 유형화를 통해 국가시책 사업화를 준비,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 및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1]을 발표

나. 추진 경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도 제1회 추경(2018.5.21.)에서 신규 편성을 통해 한시사업(사업기간 2018~2021년)으로 도입되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도록 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임

---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관계부처합동, 2018.3.15.): 지역·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로서 범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청년일자리 사업.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정착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유형은 ①지역정착지원형,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③민간취업연계형으로 2018년~2020년까지 유지되었고,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비대면·디지털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④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을 신설함

[2018~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4유형)* (*2021년 도입)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예) 미술관 큐레이터, LPG가스점검	비대면·디지털 분야 예) AR/VR, AI, ICT 등 디지털 분야 직무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부터는 신규 유형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 추진 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지원 수요와,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에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신규유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2년부터 3개 유형을 신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지역혁신형(1유형)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지역포용형 (3유형)
		지방소멸위기지역창업 (2-1유형)	창업청년 플러스 (2-2유형)	
취·창업 분야	지역인증기업, 지역혁신 주도산업분야 직무, 지역균형뉴딜 연계산업 직무, 미래신산업분야 직무 등 관련 기업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의 창업	지역특화·전략산업 및 지역장인육성 등 분야의 창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공헌연계 직무 분야 기업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획재정부(2021)

다. 사업 내용

❑ 사업유형별 지원 내용

○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인건비 및 기타 지원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 최대 2,400만원, 기타지원비 연간 300만원을 1~2년간 지원하고 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비교]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4유형) (2021년~)
사업 대상	연령	만 39세 이하			
	대상	미취업자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목적	의의	지역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정착 유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및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부문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 연계	비대면·디지털 영역에서 일 경험 및 전문 교육을 통해 청년의 역량 향상
사업 내용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예) 미술관 큐레이터, LPG가스점검	비대면·디지털 분야 예) AR/VR, AI, ICT 등 디지털 분야 직무
	지원 기간	2+1년 (3년차 취·창업 시 추가지원)	2년간 (취·창업 지원)	1년 이내 (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1년 이내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 경험 및 전문교육 후 취·창업 연계)
소요 예산	1인당 단가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비 300만	인건비 외 간접지원 1,500만 기타지원비150만	인건비 2,250만 (파트 1,125만) 기타지원비 200만	인건비 2,400만원 기타지원비 300만원
	보조율 (국비)	전국 50%, 서울 30% (기업부담분 20%)	전국 50%, 서울 30%	전국 40% (900만원 한도) (기업부담분 10%)	전국 50%, 서울 30% (기업부담분 10%)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1)

❑ 모든 유형에 공통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지원’ 내용

○ 각 사업유형에 대한 본 사업 예산 지원 이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체계획과 재원으로 추진하는 공통 지원사항이 존재(월세 지원, 복지포인트 지원, 지역 융화 교육, 정착지원 컨설팅, 참여자 간 네트워킹 지원 등)

○ 자율지원 사항은 그 내용,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나, 자율지원 내용 미포함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음

라. 사업 추진 체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을 사업 운영 주체로 하여 추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수립,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따라 세부 사업을 설계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행정안전부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심사하여 세부 사업 선정 및 사업별 규모를 확정

○ 각 지자체에서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공모 및 접수, 청년 및 사업장 선발 등을 포함한 사업을 시행(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음)하며, 사업 참여자 교육, 네트워킹 지원, 구직 프로그램, 자율지원 사항을 지원하고, 분기별 사업장 점검, 참여자 간담회 운영 등 현장점검을 시행

〈 사업추진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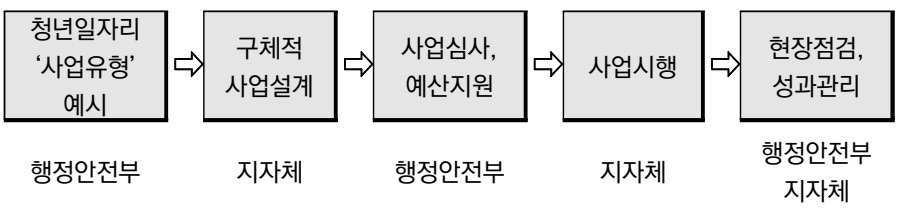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가.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18-’21년간 참여자 수는 총 116,748명

○ 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 68,363명(58.6%),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4,062명(12.0%), 민간취업연계형 24,489명(21.0%)이었고, 2021년부터 신설된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9,834명(8.4%)이 참여하였음

○ (중도탈락률) 전체 참여자 중 중도 탈락한 인원은 21,272명으로 중도 탈락률은 18.2%임

○ (주민등록이전비율) 동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사업 참여가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유지하는 것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참여자 중 해당 지역에서 참여한 청년은 2021년 기준 91.3%이며 사업 참여를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청년의 비율은 8.7%임

❑ 사업에 참여한 기업(청년 창업 유형인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제외)은 2019~2021년간 총 45,681개소임

○ 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에 3만 2,081개소가 참여하여 전체의 70.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민간취업연계형은 8,742개소(19.1%),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4,858개소(10.7%)가 참여함

나. 사업비 집행 현황

❑ 사업비는 유형별 지원내용 및 단가, 지방비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함

○ 각 유형별 국비 보조율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의 경우 전국 50%, 서울 30%이며, 민간취업연계형은 전국 40%(9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보조함

○ 기업의 부담은 청년의 임금(필수지원)에 대해서만 주어지며, 기업의 성격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가능하고, 조정된 기업부담분은 지방비로 계상이 가능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액은 사업 시행연도인 2018년에는 831억원, 2019년 2,210억원, 2020년 2,350억원, 2021년에는 2,450억원이었음

◦ 실 집행률은 2018년에는 하반기 사업 추진으로 41.3%이었으나, 그 이후 2019년 74.9%, 2020년 88.6%로 증가하였음

◦ 2021년에는 2,450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550억 7,000만원의 교부현액 중 2,188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 85.8%로 나타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행정안전부)[1]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8	-	83,072	83,026	82,892	-	82,892	34,225	45,587	3,080	41.29%
2019	208,634	220,994	220,837	220,559	45,587	266,146	199,339	32,368	34,439	74.90%
2020	235,003	235,003	234,899	234,140	32,368	266,508	236,117	10,871	19,520	88.60%
2021	235,003	245,047	244,981	244,199	10,871	255,070	218,824	15,717	20,529	85.79%

주: 1)부처 예산액 및 집행액은 자치단체보조금과 직접사업비를 합한 금액임
1. 2021년 지자체 집행액, 불용액 및 실집행률은 현재 정산중으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행정안전부

Ⅳ. 주요 쟁점 분석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설계 및 합목적성

가. 사업성과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 수'를 사업실적 및 성과로서 관리하고 있으나,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소멸 완화'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사업성과로서 ‘일자리 창출 수’라는 단일지표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에서 중도탈락자 수를 함께 포함함에 따라 사업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있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인 고용유지율이나 창업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알기 어렵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청년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의 효과성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현 사업성과 측정 지표를 재검토하고,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는 이 사업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사업 목표이므로, 이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개선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함께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므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주여건을 파악하고 자율지원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동 사업에는 인건비 외에도 본 사업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자율지원’ 사항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반드시 충분한 수준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 참여 청년들이 임금 이외에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으로 꼽은 것은 주거지원(36.0%) 및 교통 수당(26.1%)이었고, 동 사업에서 만족하는 부분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이 ‘해당지역 정착’ 항목으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주여건 지원이 사업 참여자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는 요소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원요소를 파악하고 지원내용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자율지원 사항 및 집행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사업 참여자 모집 시 표준화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참여 청년에게 제공하는 자율지원의 내용 및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율지원 예산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자율지원 사항의 차이는 지자체의 지원요소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지원 사항에 대해 일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자율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자율지원 사항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에 대해 파악 및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자율지원 사항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자율지원의 목적에 맞는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지자체의 자율지원 사항 및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참여 공고 시 자율지원에 대해 명확히 제공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사업 비교·선택 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계속 추진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동 사업은 현재 '청년 인구 일시적 증가'라는 한시사업 추진의 명분이 사라진 상태이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새롭게 추진된 신규 유형은 기존사업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18년 한시사업 추진 단계에서 제시하였던 '일시적 청년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률 악화'라는 환경적 요인이 약화 되었음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고서(기재부)에서는 2022년 이후에는 기존 참여자의 연차지원액만 예산에 반영하는 높은 수준의 '감축'을 하도록 평가하였고, 재추진할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기한 이후 환경 변화와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유형으로 추진하고, 이에 앞서 전략적 중장기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2년 예산안 편성에서 중장기계획 수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유형 개편 및 예산을 책정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신규 유형은 기존의 사업유형과 대동소이하여,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청년 인구 증가율 감소의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였을 전략적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추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효과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계속사업으로의 추진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재정 투입은 계속되지만 기업의 비용 절감(이윤 증가)의 효과만 크고, 청년에게는 단기적 효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역 이동 비용(주거, 교통비)에 따라 청년의 사업 효과가 감소하므로 이 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적절한 보전 없이는 청년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나,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동 사업이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어 청년이 정주할만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가 핵심인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동 사업은 그 효과가 발휘되기에 제약이 크며, 고용 여력이 없는 기업에게 청년 임금에 대한 1~2년의 단기적 재정지원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또한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냉철한 재고가 필요함

○ 따라서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청년 지역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 지역 내 산업, 경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의 발전 방향을 큰 틀에서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총괄적인 지역 일자리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서 동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앙부처 중심의 고용정책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지역고용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 또한 지역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업 연계 및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역인적자원위원회, 고용노동지청 및 유관기관의 전문성 및 인력풀을 활용,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지역의 고용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라. 일자리 사업유형 재분류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고용장려금' 유형에 부합하므로, 유형을 재분류하고 기업부담분을 확대하도록 사업 내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인턴형)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함보다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청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 채용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장려금 사업유형에 부합함

○ 고용장려금 사업의 기준에서 볼 때, 동 사업의 재정지원 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부담분은 매우 낮으므로, 일자리 사업유형 재분류와 함께 기업부담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체계의 효율성

가. 지자체와 위탁수행기관의 유기적 업무 협력과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운영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관리·운영 주체가 상이하고 사업 운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과의 상시적·유기적 업무 협력관계와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

○ 동 사업의 위탁기관에는 지역의 상공회의소, 진흥원, 일자리센터, 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법인, 테크노파크, 대학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있으며, 사업 운영 주체(지자체 vs. 위탁기관)에 따라 세부사업 모집단계, 운영단계, 집행단계에 걸쳐 장·단점이 존재함

○ 사업 수행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위탁기관의 전문성이 지자체가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표준화된 운영사항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사업 진행 지자체 수 및 참여 기업이 많고 다양하므로 각 사업의 정보 전달, 취합 및 공유, 사업의 정산 등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전국의 수많은 위탁기관과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조 관계가 중요함. 따라서 총괄적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나. 사업 참여자 및 기업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 및 관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업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업 간 연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대상 공모는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침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명시사항은 없어 각 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지며 현재 일원화된 창구는 존재하지 않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동 사업의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해당하는 공고는 누락되어 있음

○ 동 사업 참여 청년 중 49.2%가 지인을 통해 사업을 인지하였다고 응답하여(한국노동패널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미취업자의 구직방법에서는 지인을 통한 구직 비율이 5.2%에 그침), 인터넷 매체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에서 동 사업의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행정안전부는 사업 참여대상 모집 및 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참여기업 및 청년이 용이하게 정보를 획득·비교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가. 청년의 지역 정주 효과에 대한 관리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요한 목표인 '청년의 지역정착'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 참여 이후의 지역 정주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동 사업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민등록 이전현황은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 한하여 보고된 정보로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청년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주요 목표인 청년의 지역 정착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지역 정착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인센티브 수령 비율을 사업의 주요 성과로 인식하고 지역 정착 효과 분석 및 지속적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 지역정착지원형에서 2년의 사업기간을 채우고 3개월 내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고용 및 창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 유인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소라 할 수 있음
- ○ 해당 지표는 지역 정착 효과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지표이나, 현재는 성과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지역정착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비함
- ○ 인센티브 수령 비율은 현재 동 사업 체계에서 지역 정착 효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이를 성과로서 관리하고 지역 정착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사업('18~'21)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시작한 청년 중 2년 만기에 도래하는 청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년 만기 이후 청년이 정규직 전환 및 창업 등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나. 사업장 지도·점검사항 구체화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환류 프로세스 마련 필요

❑ 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의 구체화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및 환류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분기 1회)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별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각 사업장 현장점검 시에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하는 등 사업장 지도 및 점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며, 점검 시 미진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여부 재점검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이용하여 전국의 1만 7천여개의 사업장(2021년 기준)을 모두 점검하는 데는 그 한계가 큼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표준화와 함께 정량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에 따른 환류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점검 체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참여 기업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참여기업이 청년을 직접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청년의 선정 과정에서 직계존비속을 제외하도록 하나, 해당 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분기별로 참여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로서 구체적인 서류 확인 등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 부정수급 사례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타 불특정 기업과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는 해당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즉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고용 유지율(중도 탈락률)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업 고용 유지율(중도 탈락률) 개선을 위하여 중도 탈락 원인분석, 사후관리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점검강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도 탈락률은 2018년 12.6%, 2019년 19.1%, 2020년 20.0%, 2021년 17.7%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도 탈락 사유는 긍정적 변화, 자기개

발, 기타로 구분되는데 '기타'의 비중이 58.8%~8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중도 탈락 이후의 사업 참여자 관리체계는 미비한 상태임

○ 중도 탈락의 사유가 타 일자리의 취업이나 창업이 아닌 이상, 사업체의 근무여건 및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일자리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청년의 중도 탈락의 구체적 원인 파악과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하여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근무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청년의 의견수렴 지침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소통과 피드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및 시사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설계 및 합목적성을 검토할 필요

○ 동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현재의 성과 측정 지표(일자리 창출수)를 재검토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청년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지속적 사업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필수 요소로 정하고 있는 '자율지원' 사항에 대해 목적에 맞는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지자체별 자율지원 사항 및 집행에 대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참여자 공고 시 자율지원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지침으로 명시할 필요

○ 한시사업 추진 시 제시하였던 환경적 요인이 약화됨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략적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계획에 따라 효과적 이행을 위해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의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역인적자원위원회, 고용노동지청 및 유관기관의 전문성 및 인력풀을 활용,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지역의 고용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

○ 현재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 사업은 사업 체계상 청년 채용을 장려하는 사업으로서의 ‘고용장려금’ 유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자리 사업유형을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기업부담분을 늘리고 사업 내용을 재설계할 필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동 사업은 전국의 지자체, 위탁기관 등 운영 주체가 상이하므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 운영의 표준화 및 전문성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며, 전국의 위탁기관 및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행정안전부의 유기적 협조 관계 유지 및 총괄적 추진체계 작동을 위하여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홍보 및 관리 창구가 지자체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 및 사업주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일원화된 창구 마련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다양한 청년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 관리 필요

○ 2년간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정착하는 청년에게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 수령비율’은 현 사업 체계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 효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이므로 성과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종료 이후 청년의 지역정착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의 참여 사업장에 대한 점검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미비하므로,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 감독,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점검 체계 및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환류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 기업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친인척 채용 등 부정수급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업 중도 탈락률 개선을 위해 청년의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Ⅰ 개 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최근 20년간 인구이동 현황을 들여다보면 2010년까지는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았고, 2011년에서 2016년 사이는 수도권 전입과 전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수도권 순유입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의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2070년까지 전망한 결과 이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지속적 인구 이탈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역사회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 경향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며, 비수도권의 인적자원의 부족은 지역 발전의 한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으로, 2020년 15~24세 기준 고용률은 25.2%로 OECD 평균(38.6%)에 비해 낮고, 25~54세 기준의 고용률 또한 74.9%로 OECD 평균(75.9%)에 비해 다소 낮다. 이러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청년 고용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20~39세의 고용률은 서울, 대전, 인천, 경기도, 세종시 등의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높았고 전남, 경북 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이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간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단기에 그치는 일자리이거나 민간 취업으로의 연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창

업지원 또한 해당 분야의 일 경험, 지역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효과에 제약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장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해 기업에서는 일할 청년이 없고, 청년은 근로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등 청년과 일자리가 함께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각종 자원 부족으로 산발적, 소규모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측면 또한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청년 실업 심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였다. 추가경정예산('18.5.21.)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에게는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와 주거·복지 등의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 및 농어가에는 청년 노동력을 지원하여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년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대 후반의 청년 인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고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동 사업을 2022년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까지 4년간 진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당초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게 시행되어왔는지를 살펴보며, 계속사업으로의 승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의 관점에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이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3월 수립되었던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2018~2021년간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동 사업의 설계와 합목적성, 사업 체계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사업의 전반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분석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 설계 및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사업 설계, 성과관리, 지원 내용, 사업 계속 추진의 적정성 및 사업유형 분류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② 사업 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사업 참여자 모집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③ 사업의 효과성으로는 사업효과 관리 지표 검토,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체계, 사업 중도 탈락자 관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분석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분석 내용
사업 설계 및 합목적성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내용 ○ 계속사업 추진의 적정성 ○ 사업유형의 적정성
사업 체계의 효율성	○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 사업 참여자 모집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 사업효과의 관리 ○ 사업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 ○ 사업 중도 탈락 관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사회 활력 저하, 그리고 지역 고용시장의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위기에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한 인구 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일자리 현황을 살

펴보며,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 일자리 마련과 관련한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동 사업 참여 현황을 정리하고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결산 현황을 분석한다.

주요 쟁점 분석에서는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설계와 사업 지원 내용, 성과 지표, 사업유형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의 승계 및 추진 적정성을 검토한다. 둘째, 사업 체계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운영의 주체, 사업 참여자 모집 방법,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사업의 효과성 제고의 관점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 효과 관리, 사업장 점검에 따른 환류 체계, 중도탈락 및 일자리의 질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각 쟁점의 논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보고서를 총괄하여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제출자료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였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주장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타 부처 재정지원 사업 관련 자료, 국가통계자료, 기타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Ⅱ 정책 환경 및 현황

1 정책 환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구의 대도시로의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비수도권의 청년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한계,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역의 중소기업 등은 구인난을 겪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높아 지역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정책적 배경을 두고,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의 인구 이동 및 청년 일자리 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가. 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이동 인구의 규모 및 이동성향, 인구변화 등의 측면에서 가장 역동적이라 할 수 있고, 광역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특히, 군 지역으로 갈수록)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를 보이는 양상이 지속되어왔다. 최근 20년간 인구 이동 현황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은 2010년까지 순유입[1]이었고, 2011년 최초로 순유출이 일어났다가,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순유입 규모는 다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순이동 추이,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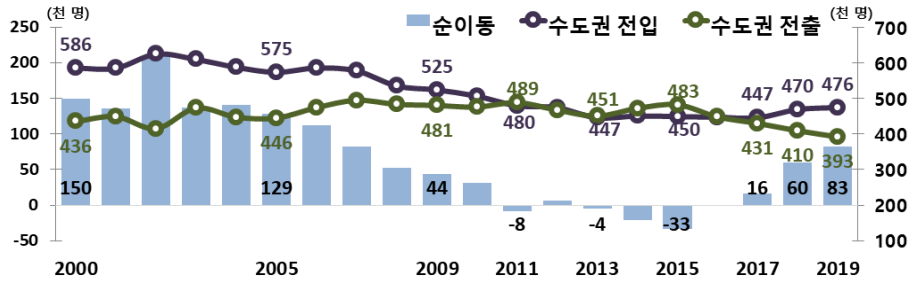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1) 순이동: 전입 - 전출, 순유입(전입초과): 전입 〉 전출, 순유출(전출초과): 전출 〉 전입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7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2] 결과,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이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수도권 인구증감 추이의 경우에도 권역별로 그 양상에 차이가 있는데, 중부권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37년을 정점으로 감소, 호남권은 1972년을 정점으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영남권 인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20년 이후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197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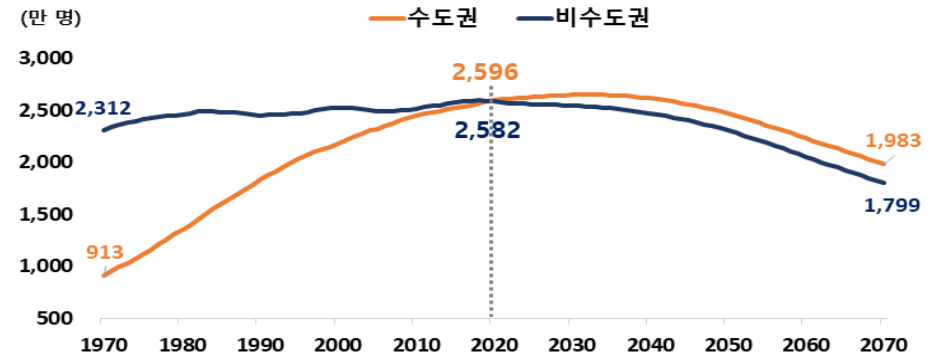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비수도권 권역별 인구 추이 및 전망, 197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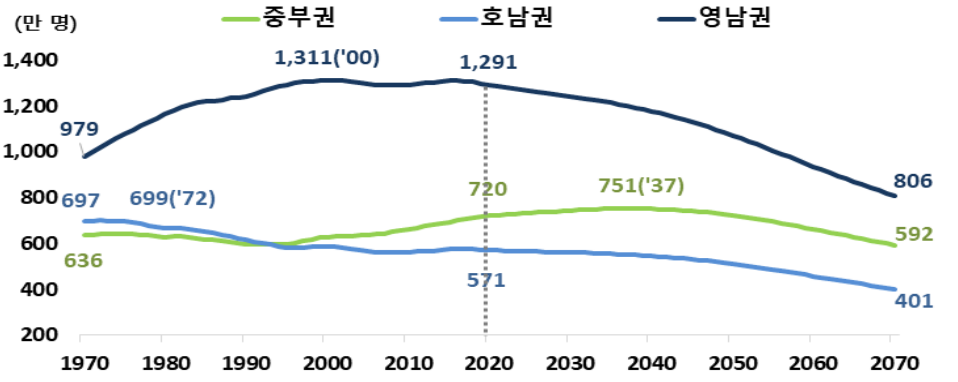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2) 「통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승인통계(승인번호 제 101033호)로서, 2017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하여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30년(2017~2047년)간의 시도별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이탈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력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방소멸위험지수[3]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2018)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89개(39%)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서 2013년 75개(32.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더 세분화된 읍면동 기준으로는 전체 3,463개 읍면동 중에서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2013년 1,229개(35.5%)에 비해 더욱 큰 증가를 나타내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바,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인구감소의 충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연쇄효과는 시도에서 시군구, 읍면동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지방소멸위험 현황 (2018.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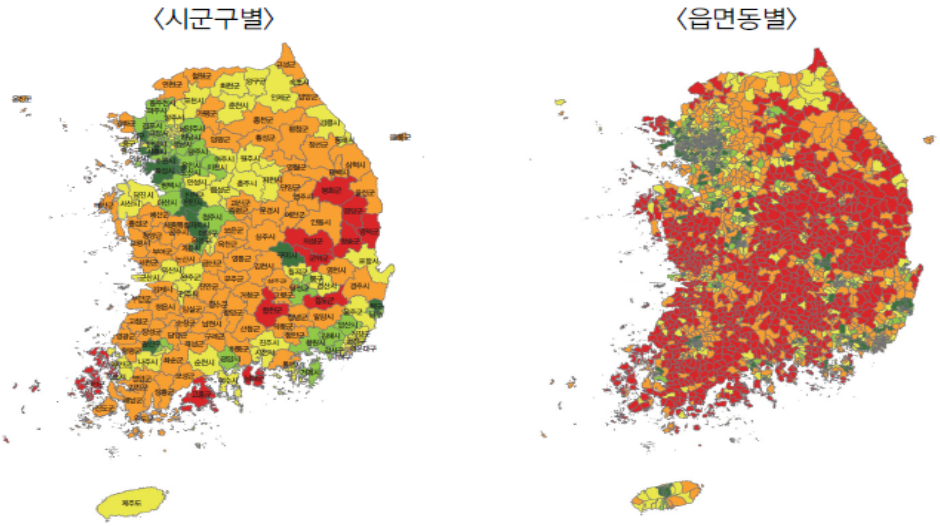

주: 주황색(소멸위험지수 0.2~0.5미만)과 빨간색(0.2미만)으로 표시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2018. 7.)

3)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 매우 낮음(1.5이상), 보통(1.0~1.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위험진입(0.2~0.5미만), 소멸위험 고위험(0.2미만)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됨(이상호, 2018). 2018년 6월 기준 전남이 0.47, 경북 0.5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 고시[4]하여 행정 · 재정적 지원[5]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하여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선정하였고,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계 (89)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4)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66호, 2021.10.19. 시행)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는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넷째,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0.18.).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중 '청년순이동률'은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6]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의 변화를 뜻하며,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려하고 있는 지표이다. 수도권에 청년층이 집중되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중에서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지역이동을 선택하는 청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지리적으로 표출되는 점은 청년문제가 지역의 문제이기도 함을 보여주며, 인적자본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핵심요소임을 고려할 때 청년의 지역 이동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실업 해소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강동우, 2019).

또한 비수도권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은 지방인구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출산율을 저하시켜 지방인구의 자연감소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국회예산정책처, 2022)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지역 이동은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지표이다. 즉,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는 지역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에 기인하며, 결국 일자리, 교육, 복지, 사회간접자본 등이 포함되는 정주여건의 격차 문제, 즉 균형발전문제로 귀착된다(박진경 외, 2020)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20대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 30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순유출이었다가 2018년 순유입으로 재전환, 40대 이상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에서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6) 연앙인구란 해당 연도의 중앙일인 7월 1일의 인구수를 뜻한다.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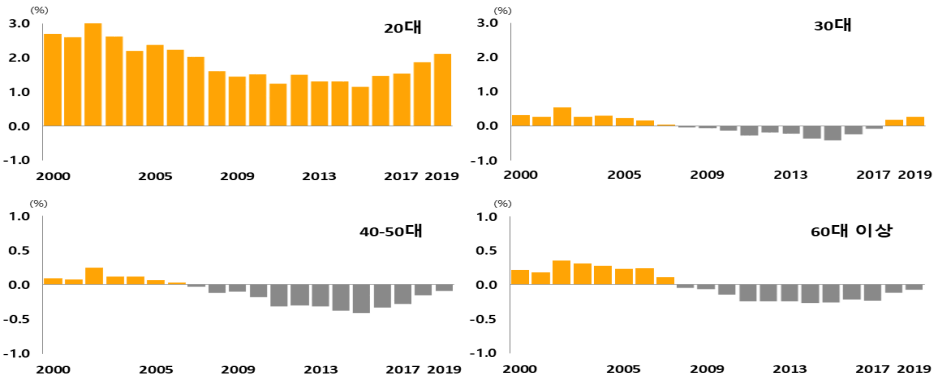

주: 이동률(전입률, 전출률, 순이동률) = $\frac{\text{이동자수(전입자수, 전출자수, 순이동자수)}}{\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

자료: 통계청(2020)

그리고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일어나는 전입사유로는 직업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순이동(시도별), 전입사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시도로 순이동〉 〈전입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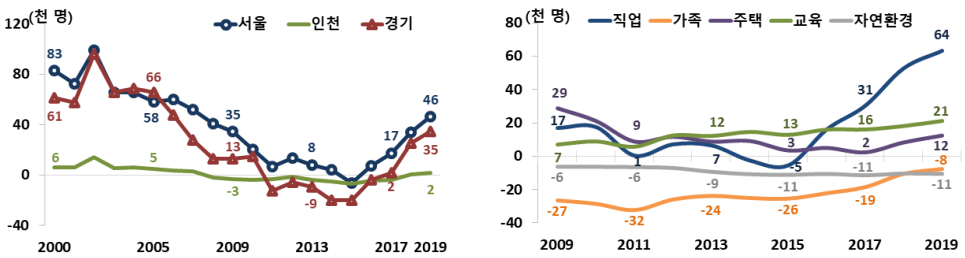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은 대학 진학과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지리적 근접성 및 지역의 산업구조는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성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강동우, 2019).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구조가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과 노동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 지역 청년일자리 현황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5~24세를 기준으로 살펴본 2020년의 국제 비교에서 미국(45.9%), 일본(46.4%)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5.2%로, OECD 국가의 평균(38.6%)보다도 13.4%p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친 2020년을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고용률은 대부분 꾸준한 증가추세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국제적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25~54세의 고용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74.9%로 미국(75.6%), 일본(85.5%), OECD 평균(75.9%)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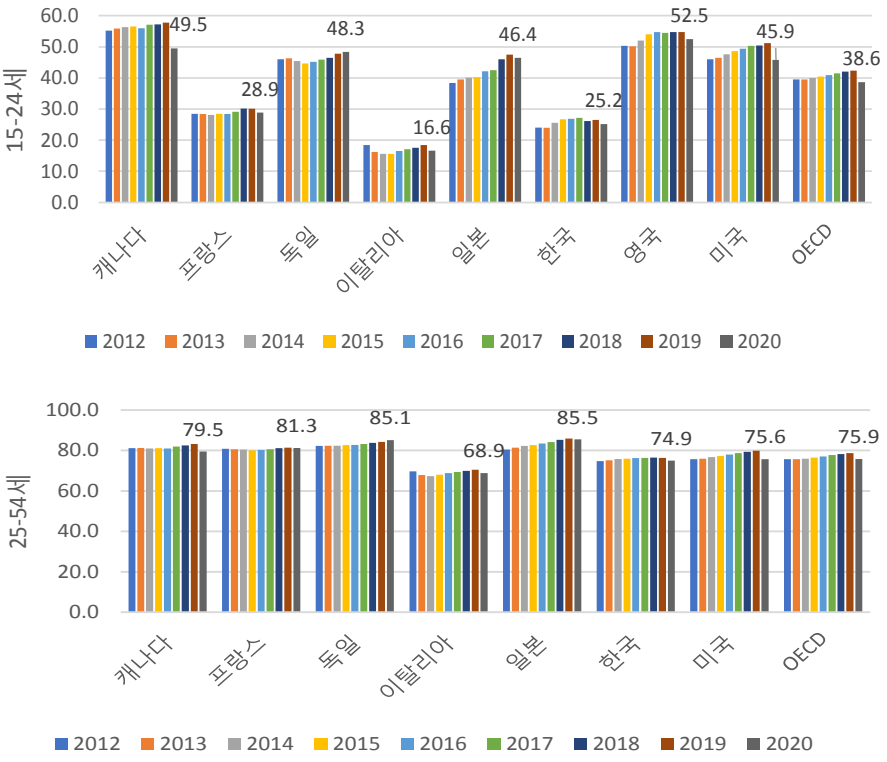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 (2022.3.1. 접속)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43.5%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47.9%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2017년에는 9.8%이었으며, 2018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21년의 청년 실업률은 7.8%를 나타내었다. 15~29세 전체 생산가능인구 수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은 2012년 40.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44.2%를 기록하였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전국의 20~29세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57.4%이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시(61.6%), 인천시(61.6%), 충청북도(59.9%), 경기도(59.3%), 대전광역시(56.7%) 등이 높았고, 전라북도가 49%로 가장 낮았다. 2012년에서 2021년간 20~29세의 청년 고용률 변화 추이는 55.7~58.2%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동향]

(단위: 천명, %)

15~29세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생산가능인구(A)	9,531	9,439	9,395	9,380	9,363	9,282	9,149	9,060	8,911	8,770
경제활동인구 (B=C+D))	4,150	4,053	4,179	4,253	4,334	4,333	4,312	4,331	4,133	4,203
취업자(C)	3,837	3,728	3,802	3,864	3,908	3,907	3,904	3,945	3,763	3,877
실업자(D)	312	324	378	389	426	426	408	386	370	326
고용률(=C/A)	40.3	39.5	40.5	41.2	41.7	42.1	42.7	43.5	42.2	44.2
실업률(=D/B)	7.5	8.0	9.0	9.1	9.8	9.8	9.5	8.9	9.0	7.8
경제활동참가율 (=B/A)	43.5	42.9	44.5	45.3	46.3	46.7	47.1	47.8	46.4	47.9

주: 1. 통계청에서 작성 기준으로 하는 청년의 연령은 15~29세임
2.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3. 고용률은 만15~29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4.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29세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청년(20~29세) 고용률]

(단위: %)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58.2	56.8	57.4	57.9	58.2	57.6	57.9	58.2	55.7	57.4
서울	59.1	57.7	57.0	57.9	58.4	58.1	59.2	60.0	58.1	61.6
부산	55.3	52.8	53.8	53.6	55.9	54.5	53.9	56.3	52.5	52.3
대구	55.6	52.1	53.6	55.7	54.8	49.8	50.3	54.3	51.2	56.0
인천	60.8	58.4	57.6	58.3	61.6	61.4	64.6	64.6	62.2	61.6
광주	52.9	50.9	53.4	51.0	49.7	51.4	54.6	53.9	53.0	49.6
대전	53.2	53.9	56.9	56.3	58.2	55.8	50.7	53.0	57.5	56.7
울산	57.7	57.5	56.3	54.9	55.2	58.3	57.8	55.3	52.3	51.0
세종	-	-	-	-	-	51.1	54.0	49.5	52.0	49.6
경기	61.1	59.4	60.1	61.6	61.2	61.0	61.5	60.8	57.2	59.3
강원	54.2	51.2	50.7	50.0	51.7	58.1	60.4	58.9	55.3	54.0
충북	54.5	58.4	61.9	59.2	59.5	60.2	60.0	57.1	56.8	59.9
충남	61.6	60.2	60.8	63.4	59.7	56.1	58.9	59.9	55.7	55.4
전북	51.1	53.1	53.5	51.8	49.5	48.5	45.9	46.4	43.8	49.0
전남	58.2	60.9	57.4	55.6	54.3	53.3	53.7	56.0	54.7	53.1
경북	56.9	54.4	60.9	60.1	57.8	55.8	52.2	53.0	51.4	52.3
경남	56.4	54.7	54.0	54.2	58.6	56.5	56.2	55.5	52.9	54.4
제주	64.7	62.7	60.4	62.1	67.2	70.3	67.3	60.9	56.0	5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지역별 청년(20-29세) 고용률의 변화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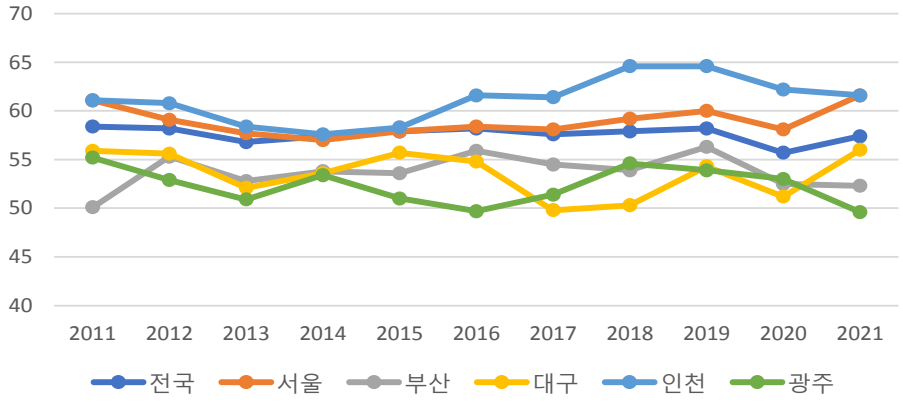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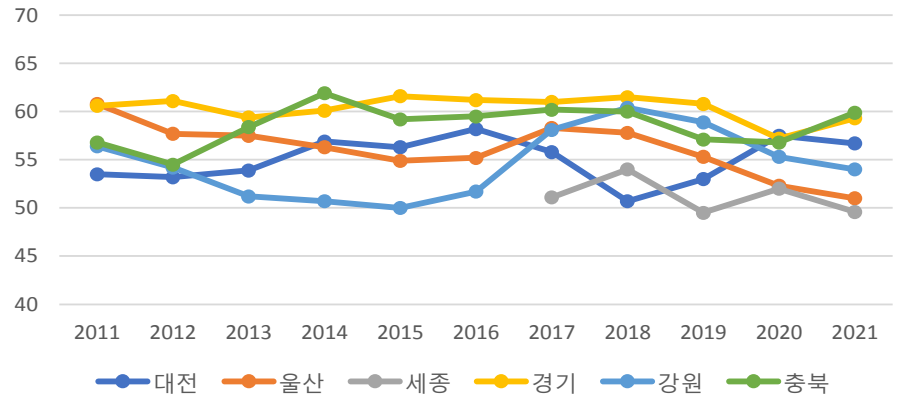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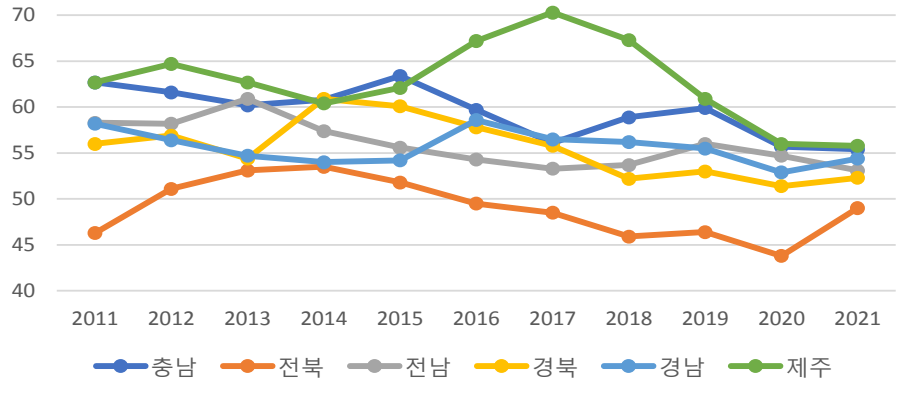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다음은 10년 전(2011년)을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이 어떠한 증감양상(%p)을 보였는지를 한눈에 살펴보기 쉽게 나타낸 그래프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충북, 전북, 대전 등에서는 2011년과 비교할 때 증가한 상태가 유지됨을 보였고, 서울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고용률이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10년 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경기도는 고용률의 증감 변화가 크지 않았다. 반면,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남 등에서 고용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크게 나타나, 지역별로 청년 고용률의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고용률의 증감(2011년 기준)]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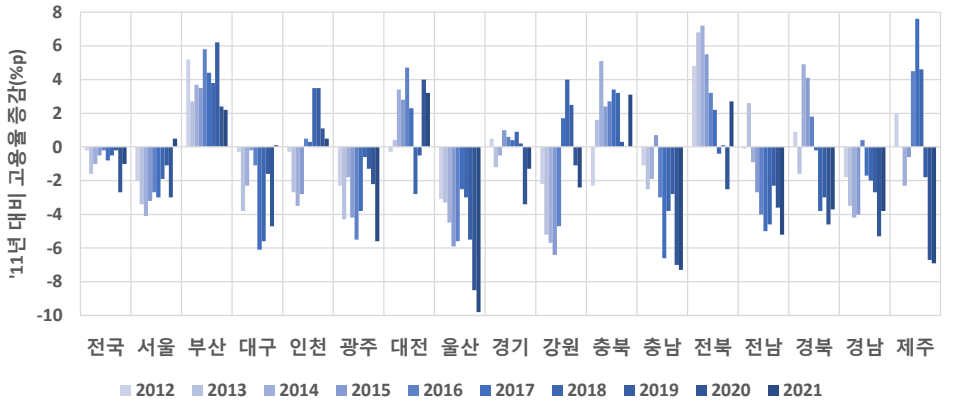

주: 고용률 증감(%p) = 해당년도의 고용률 - 2011년도의 고용률, 세종은 2016년 이전의 자료가 없어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계산

청년층의 첫 취업 소요기간을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율은 2012년 기준 33.2%이었으나 2021년에 들어서는 3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12년 24.0%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6.7%로 나타나, 첫 취업의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15~29세) 첫 취업 소요기간]

(단위: 천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15~29세 임금근로자)	3,898	3,814	3,777	3,860	3,994	4,092	4,054	4,070	3,963	3,95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개월 미만	52%	51%	51%	51%	51%	50%	50%	50%	49%	47%
3~6개월 미만	14%	13%	13%	13%	13%	14%	12%	13%	13%	14%
6개월~1년 미만	9%	10%	10%	9%	9%	9%	11%	10%	11%	12%
1~2년 미만	10%	11%	11%	12%	11%	12%	12%	12%	12%	12%
2~3년 미만	5%	6%	6%	6%	7%	6%	7%	7%	6%	7%
3년 이상	8%	9%	9%	9%	9%	10%	9%	10%	8%	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5월 기준

또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근로형태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청년층 취업자의 20%는 첫 일자리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였고, 이는 2012년의 12%와 비교할 때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첫 일자리로서 전일제 일자리에 종사한 비율은 2012년 85%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77%에 그쳤고, 그 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한 비율은 1~2% 내외로 10년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전일제 일자리의 비중이 줄고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의 근로여건 악화 내지는 고용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층 첫 일자리 근로형태]

(단위: 천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4,037	3,857	3,827	3,926	4,033	4,101	4,140	4,168	4,070	4,056
임금근로자	97%	97%	97%	96%	97%	98%	98%	98%	97%	97%
전일제	85%	86%	85%	83%	83%	82%	81%	78%	77%	77%
시간제	12%	11%	12%	13%	14%	16%	17%	19%	20%	20%
자영업자	2%	1%	2%	2%	2%	1%	1%	1%	2%	2%
무급가족종사자	1%	1%	1%	2%	1%	1%	1%	1%	1%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5월 기준

2 정책 현황

가. 청년 일자리 정책 및 주요사업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청년 고용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거의 매년 수립해 오고 있으며 최근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 및 「2019년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이르기까지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거시적인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2018년 3월 15일 수립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 현황]

일자	대책	내용
2013.12.18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앞당기기, 일자리를 만들고 보상시스템 바꾸기, 청년의 창업열기 되살리기
2014.4.14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	학교교육, 직업훈련 내실화-자격불일치 해소, 구직, 취업-선취업 후진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경력단절 방지
2015.7.27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2017.3.22	청년 고용대책 보완방안	취업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고용 확충
2018.3.15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합동 6개 주제: 청년일자리 대책(기재부), 청년고용 촉진방안(고용노동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교육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중기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행안부)**,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방안(기재부)
2019.7.1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청년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분야 추가과제
2021.8.26.	청년특별대책	코로나 위기 극복(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구직수당), 청년세대 내부 격차해소(국가장학금, 등록금, 월세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미래도약 지원(창업활성화, 청약통장, 장병사회복귀금)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1) 및 「청년특별대책」 보도자료(2021.8.2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7]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① 직접일자리, ② 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 고용장려금, ⑤ 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총 6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유형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 중 ① 직접일자리 유형과 ⑤ 창업지원 유형의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예시사업]

분류	주요 내용	사업 예시
직접일자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참여자 고용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복지부)
직업훈련	전문기술능력이나 현장직무훈련 훈련 등 취업성이 강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고용부)
고용서비스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부)
고용장려금	고용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취업자 개인에게 수당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고용부)
창업지원	대출, 시설임대, 컨설팅 등 창업을 위한 간접적 지원 또는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을 지원	창업기업자금 (중기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실업보험,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 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구직급여 (고용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동시장 안팎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리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 일자리(부처합동),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부처합동),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기획재정부) 등이 있다.

[2021년 청년 구직자 지원 주요 사업 시행계획]

주요사업명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취약계층에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1유형(청년특례), 2유형(취업성공패키지) - 지원인원 확대('21,신규) 1유형 10만명 + 2유형 13만명 등 총 23만명 → 청년특례 5만명 추가 총 28만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확대 ('20) 29만명 → ('21) 38만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부처합동)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확대 ('20) 6만명 → ('21) 11만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부처합동)	공간, 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 직접 일자리 지원 - 지속지원 ('20) 10만명 → ('21) 3.7만명 추가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정안전부)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활력 제고 지원 - 지속지원 ('20) 2.6만명 → ('21) 2.6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기획재정부)	취업준비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 (1/4분기 중 0.42만명 채용) - 지원인원 확대 ('20) 1.7만명 → ('21) 2.2만명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1.4.)

2021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8]과 관련한 정책은 총 199개로,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44개, 문화체육관광부 32개, 중소벤처기업부 23개, 외교부 16개, 교육부 1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정책(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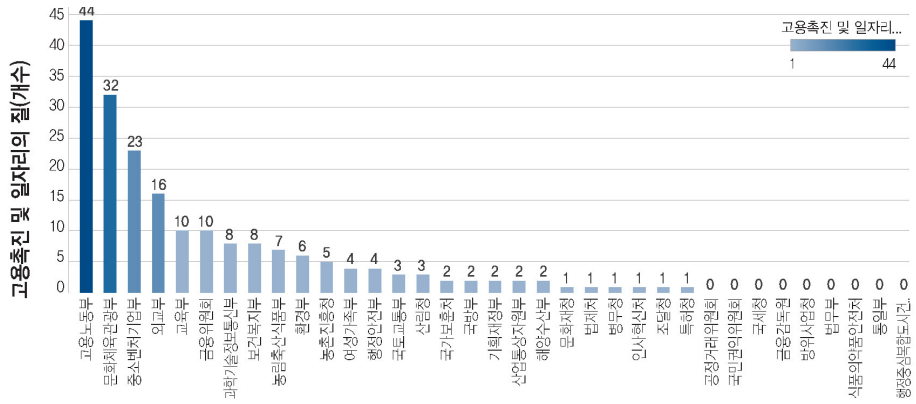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1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정책사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청년일자리 사업유형은 크게 직업훈련사업(운영기관, 미취업 청년대상), 고용장려금사업(청년 고용 중소 ·중견기업 대상), 고용서비스사업(미취업 청년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유형으로는 일학습병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고용장려금사업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고용서비스사업에는 청년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 오프라인 청년센터, 대학 내 일자리 센터 및 취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이 있다.

8) 「청년기본법」(2020.2.4. 제정, 2020.8.5. 시행)에서의 청년정책 분류체계(제15조, 제17조 내지 제24조)는 1)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질 향상, 2) 창업지원, 3) 능력개발, 4) 주거지원, 5) 복지증진, 6) 금융생활 지원, 7) 문화활동 지원, 8) 국제협력 지원, 9)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확대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2022년)]

사업 유형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원대상
직업 훈련	일학습병행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 후 현장훈련 실시	기업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산업계,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 실비 지원, 인프라 지원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 우수 중소기업 탐방 및 연수기회제공 -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운영기관, 미취업 청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여 취업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관리	모든 청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공 및 훈련비 지원	훈련기관, 미취업 청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취·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사업 지원 - 고용 안전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고용 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중소·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 중소·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	중소·중견기업
고용 서비스	오프라인청년센터	청년정책 안내, 취업역량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커뮤니티 활동 운영 지원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온라인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공간,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모든 청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정부·대학·지자체 매칭으로 대학 내 일자리센터의 운영비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해외취업지원	해외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 교육연수 및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제공	해외취업 희망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참여 지원	지방자치단체, 미취업청년

자료: 고용노동부(2022),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상자별 정책자료(청년),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은 총 975개이며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별 그 규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 유형에 속하는 청년정책은 경상남도가 135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2개, 전라북도 114개, 서울특별시 104개,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는 62개, 충청남도는 55개 등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10개로 정책의 개수가 가장 적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또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서울이 1,2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42억원, 전북 906억원 등의 순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정책(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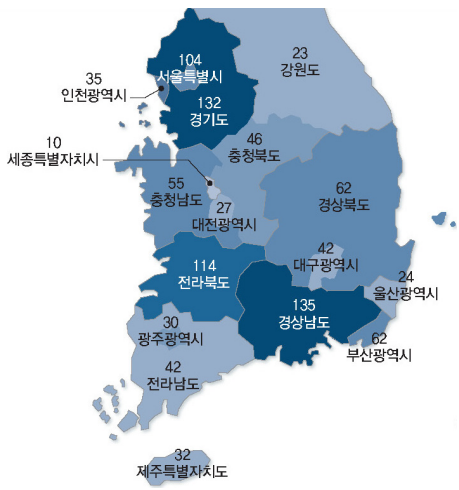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1

[광역자치단체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정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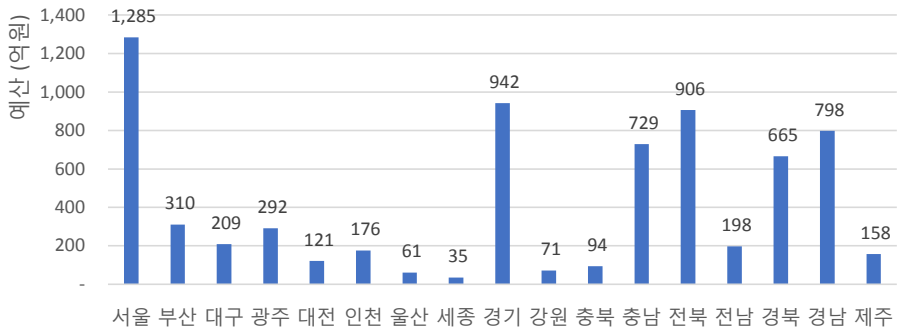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1

나. 지역인구감소 대응 정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일자리 마련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 환경으로서의 총인구 및 청년지원과 관련한 법령, 지역인구감소 관련 법령(법률안)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인구감소 관련 재정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관련 법령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문제를 저출산에 따른 자연인구감소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총인구 및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문제가 저출산이 아닌 사회적 인구이동 특히 청년층의 유출에 기인하며 이로 인한 지역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최근 인구감소 대응 입법은 지역인구감소 문제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인구감소 대응 관련 대표적인 법률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들 수 있다. 동 법률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러한 입법배경 하에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국가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은 물론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총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율 저하가 아니라 사회적 인구유출에 의해 발생하는 지방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박진경, 2020).

또한, 청년지원 관련 법률을 보면, 2000년 이후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제정되었으며, 2009년 청년고용촉진대책 수립 등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지원 관련 법률들은 전국적 공통지원 사항으로서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의 청년인구 유입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대응 및 청년지원 관련 주요 법률]

구분	법률명(제정일)	소관부처	주요내용
인구감소대응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2005.5.18.)	보건복지부	-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시행(국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시행(지자체) - 저출산정책의 기본방향(인구정책, 출산과 보육, 경제적 부담 경감 등)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취약계층 노인 배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20.)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귀농어·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농식품부, 해양수산부) -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청년고용 및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구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2004.3.5.)	고용노동부	-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책 수립·시행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6.5.12.)	중소벤처기업부	- 예비창업자,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촉진지원 - 지역특화산업 창업지원
	청년기본법 (2020.2.4.)	국무조정실	-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시행 - 지방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실태조사 -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설치(국무총리 소속) -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등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바탕으로 작성

지역인구감소 대응 법령을 살펴보면, 2021년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가속화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동 법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과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규정]

구분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 (지정 대상)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군·구 - (지정시 고려사항)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 (지정절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법 제16조의2)	-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16조의3)	-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2021.12.7.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은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간 합동기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며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관리·운용한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매년, 2022년은 7,500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기금관리운영비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금관리조합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기금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2단계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까지 10년 동안만 운용하도록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기금법」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규정]

조항	주요내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 운용(제22조)	-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 - 기금관리조합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제23조)	- 매 회계연도 재원: 정부출연금 1조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제24조)	-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 기금 관리·운용 경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 위원회 설치(제2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 설치 - 당연직 위원: 기재부, 행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제28조)	-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부칙 제2조)	- 법 시행일로부터 2031년 12월 31까지 유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기금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 및 별도 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이미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단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거나(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 없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최근인 2022년 6월 10일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2023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것을 바탕으로 가결된 것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6.10.제정)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등	- 시·군·구/시·도/국가 단위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국가, 시도, 시군구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동 시책 추진 시 상호간 협약 체결 등 -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간 교류·협력 촉진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지방교부세 지원,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청년·중장년 등 정착지원, 생활환경·경관 개선, 정보통신기술 기반 행정서비스 활용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기반 확충, 노후·유휴시설 정비 및 활용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주: 동 법률안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바탕으로 작성

(2) 지역인구감소 대응 관련 재정사업

2020년 12월 8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재정적 지원 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해당 지자체가 각 부처의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범부처가 협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정부가 선별한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예산 기준 52개 내역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되며 사업규모는 총 2조 6,295억원에 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가운데 지역인구감소 대응과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인구감소 대응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제외)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사업과 패키지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양여금의 집행현황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2022년 인구감소 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 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2년 예산
총 12개 부처, 52개 사업			2,629,517
교육부 (2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2,00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244,000
국토부 (1개)	도시재생사업		950,479
농식품부 (6개)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 귀촌 유치지원	14,140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정보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7,620

부처 (사업 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2년 예산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1,748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8,899
	농촌 보육여건 개선	-	4,084
	농업 농촌 사회적가치 확산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5,852
문체부 (4개)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8,000
	지역문화진흥	생활문화활성화	5,960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4,600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거점도시 육성	33,081
법무부 (2개)	출입국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소멸지역 거주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쌍방향 E-러닝 시스템 구축	17,86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9,986
복지부 (1개)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10,725
산림청 (1개)	탄소중립 도시숲	생활밀착형숲조성-소읍지역실외정원	10,000
산업부 (1개)	지역투자 촉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187,130
여가부 (1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5,042
중기부 (7개)	지역특화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15,290
		주력산업기업지원	22,810
		지역혁신바우처	16,756
		지역스타기업육성	11,820
		수출 새싹기업 육성	7,040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6,903
	모태조합 출자	지역뉴딜 벤처펀드	40,000
해수부 (13개)	어촌뉴딜300	어촌뉴딜 통한 혁신어촌조성	514,500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3,039
		어촌 활력증진 지원	3,920
	청년 어촌정착지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1,712
	수산 공익 직불제	-	12,367
	어촌 활력기반 구축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10,381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14,31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1,400

부처 (사업 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2년 예산
해수부 (13개)	천일염산업육성	-	8,370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인프라조성	51,940
		해양관광콘텐츠개발	2,112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	3,950
	귀어귀촌활성화	-	4,951
행안부 (13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238,766
	지역발전 활성화	**지방소멸대응 빅데이터 분석 지원**	**1,000**
		지방소멸대응 전문 컨설팅단 운영 등	**2,000**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890**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1,750**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청년 자립 및 활력지원**	**3,795**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12,200**
		과학기술기반 현안 해결	**1,508**
		주민참여기반 지역문제 해결	**1,400**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사업 조성·확충**	**2,800**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6,445**
	접경권 발전지원	**접경지역 LPG 인프라 구축**	**6,000**
	섬발전 협력사업 추진	**섬지역 LPG인프라 구축**	**6,174**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인구감소 대응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발전 활성화' 세부사업에서 지역인구감소 대응 내역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사업'(2022년 예산, 3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대응 정책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9]」을 근거로 하고 있다.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동 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소멸대응 선도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20억원, 지방소멸대응 빅데이터지원을 위해 10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인구감소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인구감소대응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인구활력도 측정, 지역별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유동인구 및 소비데이터 구입, 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사업 개요]

구분	사업내용
지방소멸대응 선도모델 발굴 및 확산	-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대응전략 수립 지원 전문가 컨설팅 연구 - 인구감소대응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인구감소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지방소멸대응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운영 등
지방소멸대응 빅데이터 지원	- 인구활력도(지역 간 교류·왕래 등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지표) 측정, 지역별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발전 방향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 세부사업에서 지역인구감소 대응 관련 내역사업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2022년 예산 8억 9,000만원)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2022년 예산 17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전국 각 지역에서 청년공동체 100개팀을 선정하며 팀당 총사업비(1억원)의 50%를 국비 보조하고 있다. 사업절차는 행정안전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공동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지역 활력과 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창업·창농 등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역주민·청년 등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지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역과 연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공동체 활동 사례로, 2020년 충남 홍성의 '왓슈'는 농업 관련 기술과 귀농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하고, 소규모 지역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무연고 귀농 주민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였다. 제주의 '프로젝트그룹 짓다'의 경우 매월 마을 주민들의 영화 모임, 인문학 모임 등의 네트워크 행사를 운영하며 마을 주민과 청년, 이주민과의 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제출	⇒	청년공동체 모집·확정	⇒	자금교부 및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행안부		시·도		시·도		행안부, 시·도		시·도, 행안부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시·군·구 단위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10]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국정과제인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2019.11.5.)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제고방안의 취지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역 현장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중심의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자체 추진기반 구축, 지역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등 지역 현장의 기반조성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동 사업은 35개 시군구에 대해 국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을 보면, 협업체계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민관 협의기구 구축 및 운영,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공동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 및 금융지원, 컨설팅, 종사자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마을기업이 포함된다.

10)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된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

[2022년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시군구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 간, 민·관 간 협업체계 구축 활성화
사업시행주체	시·군·구
사업비	총사업비: 35억원= 35개 시군구 * 1억원 (국비보조율 50%)
사업내용	(협업체계 운영)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민관협의기구 구축 운영, 간담회 개최 등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컨설팅, 맞춤형 교육 등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셋째,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세부사업에서는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사업(37억 9,500만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사업(122억원), 주민참여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14억원), 과학기술기반 현안 해결 사업(15억 8,000만원) 등 4개 내역사업이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청년을 유입하여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마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청년단체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해당 지자체의 지원[11]과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업 신청자격은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되는 청년단체에게 주어지며, 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사업의 실효성,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지원 의지, 사업 지속성을 고려하며 지방소멸지역에 해당하는지도 추가로 고려된다[12].

선정된 지역(단체)에는 지방비 매칭없이 국비(2022년 기준 2억원)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청년활동공간 조성, 청년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홍보 등 청년마을의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사용된다.

11) 동 사업은 지역의 청년단체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를 주요지표로 설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2) 사업계획서 평가 시 지역소멸대상지역일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함. 가점항목(지역소멸지역) 이외 항목의 비중(100)은 각각 사업실효성 50, 지역추진 의지 30, 사업지속성 20으로 배분한다.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간조성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창업 교육·활동,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지역주민-청년 및 내·외부 청년간 교류·협력 활동
홍보	홍보 콘텐츠(영상, 책자, 카드뉴스 등) 제작, 온·오프 홍보 활동 등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 예산액은 시범사업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6억원 내지 9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본사업 예산액이 7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대상 수도 확대되었다. 연도별 청년마을 조성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개 지역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2021년 이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선정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소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청년마을 조성 추진현황]

지역	사업내용
부산 동구 초량동	○ (사업명) 삶이 꿈이 되는 이바구 마을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
인천 강화 강화읍	○ (사업명) 강화유니버스 ○ (사업내용) 청년과 지역주민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연결되는 세계
울산 울주 상북면	○ (사업명) 마음을 삭히고, 시간을 익혀가는 365발효(醱酵)마을 ○ (사업내용) 지역 내 발효식품(장류·김치·술·요거트 등) 장인에게 제조법을 배워 제품 개발 및 발효 식당·마켓·카페 창업 지원
강원 강릉 중앙동	○ (사업명) 강릉(떠나지 말고, 이주해 와서) 살자 ○ (사업내용) 강릉 구도심에 모인 강릉청년과 타지청년이 만나 친구가 되어 해변 앞 리모트 오피스를 만드는 청년마을
충북 괴산 감물면	○ (사업명) 뭐하는 농부들, 뭐하농 ○ (사업내용) 먼저 정착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청년들의 지역정착 및 창농을 지원
충남 공주 중학동	○ (사업명) 청년이 디자인하고 제안하는, '자유도' ○ (사업내용) 공주 원도심에 정착한 청년팀의 사례를 전수하고, 청년들 각자의 '자유도'에 따라 다르게 참여할 수 있는 입체적인 창업 활동 지원
충남 청양 청양읍	○ (사업명) 청양의 맛있는 동네, '청·맛·동' ○ (사업내용) 청년들의 독특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자원(고추·구기자·멜론 등)을 활용한 지역 상품 제작·판매
전북 완주 고산면	○ (사업명) 어쩌면, 로컬의 미래 '다음_타운' ○ (사업내용) 거점공간 '로컬베이스캠프'와 매개공간 '비빌언덕중개사무소'를 통한 정보공유, 지역탐색, 창업창직, 교류활동 등 지원
전남 신안 안좌면	○ (사업명)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주섬주섬 마을 ○ (사업내용) 섬과 썸타는 청년들의 동물의 섬 만들기
경북 상주 남원동	○ (사업명) 우리처럼 살 수 있어요, 이인삼각 로컬러닝메이트 ○ (사업내용) 상주 원도심에 정착한 청년창업자들과 함께 지역을 경험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
경북 영덕 영해면	○ (사업명)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 청년들의 터전, 뚜벅이마을 ○ (사업내용)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 영덕군 블루로드 및 영해면 근대문화역사거리를 중심으로 트레킹 거점마을 조성
경남 거제 장승포동	○ (사업명) 청년들의 아웃도어 라이프가 있는 아웃도어 아일랜드 ○ (사업내용) 지역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기반으로 하여 살고 싶은 청년마을 만들기 및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창출

자료: 행정안전부

다음으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사업은 주민의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참여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1년까지 총 6개소[13]를 선정하여 개소별 국비 20억원(보조율 50%)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주민참여 소통협력공간 기획 및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사업과 동 거점공간을 활용한 주민 주도 문제해결 활동지원 사업(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지자체	사업개요
강원도 춘천시 (2019.11. 개소)	구 강원지방조달청에 인근 대학교(52천여명, 춘천시 인구 18.6%)와 협업을 통해 주민 주도《 청년·지역문제 해결 거점 》으로 운영
전라북도 전주시 (2019.10. 개소)	원도심(전주시청 뒤편) 내 50여년 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선미촌’의 문제 해결을 통한 《 인권·지역혁신 상징 거점 》으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1.10. 개소)	원도심 내 이주민, 선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제주형 공유공간 》으로 조성 중
대전광역시	청년·과학연구단지·마을공동체 등 분야를 연결하는《 대전형 네트워크 공간 》조성 중
충남 천안시	천안IC 인근 사통팔달 교통요지에 지역대학 ·청년·지역혁신·업사이클링 등《 충남형 디지털 지역사회혁신의 메카 》로 조성 중
울산광역시	읍성, 최초 신작로 등 한때 원도심을 상징했던 성남동 내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등《 울산 지역사회혁신 허브 》로 조성 중

자료: 행정안전부

넷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세부사업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확충’ 내역사업이 지역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분류된다.

동 내역사업은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시설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공간의 조성·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동 사업은 관계부처 합

13) (’18년) ①강원 춘천, ②전북 전주 (’19년) ③대전, ④제주 (’20년) ⑤충남 (’21년) ⑥울산

동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2년 사업의 경우 14개소에 개소당 국비 2억원(보조율 50%)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4] 및 동 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에 도입하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은 7,500억)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15]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관심지역)에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배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을 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절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1조원을 자치단체 기금재원으로 확보('22년은 자치단체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5조 지원),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에 편성, 예산 전체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교부, 상생기금조합에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심의위 운영, 광역 25%, 기초 75% 배분, 자치단체별 투자계획 제출 및 협의(자치단체 → 조합 → 심의위), 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사업 수행,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결산·성과분석(자치단체 → 조합)의 절차로 진행된다.

[지방소멸대응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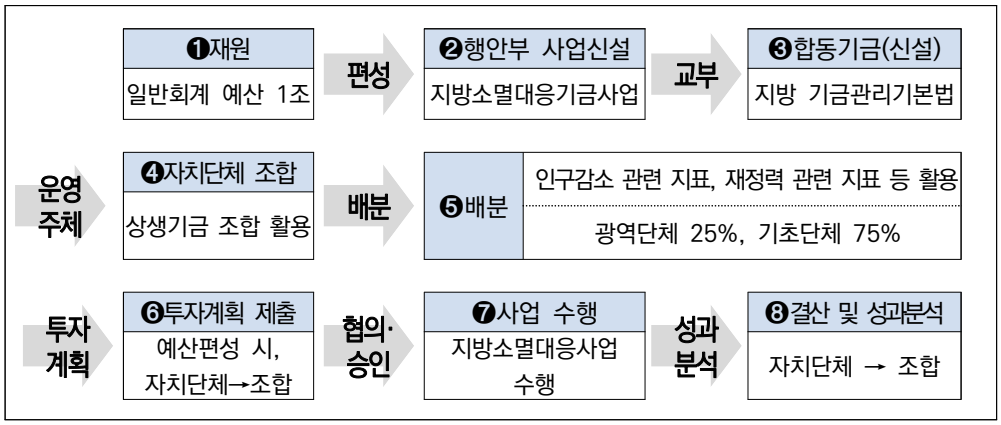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3) 일본의 지방인구감소 대응 정책 현황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시와 지방의 인구 불균형을 겪어온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도쿄권으로의 인구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을 제정하였다. 법률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창생 정책의 기본이념, 국가 책무,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창생 종합전략의 작성과 실행, 지방창생본부 설치와 관련된 규정 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이주 유도, 지방 젊은 세대 결혼 및 출산 유도, 지방 생활권 보장 등의 내용을 종합전략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은 인구감소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정촌 합병을 추진하여 왔으며[16], 과소지역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과소지역으로 지정된 시정촌 수는

2006년 1,820개 중 739개(40.6%)에서 2014년에는 전체 1,719개 중 797개(46.4%)에 이르는 등 지속적 증가 경향을 보인다. 즉,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자급자족하는 생활공조기능, 농립어업 등 지역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생산보완기능,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자산관리기능 등 공공기능 유지의 최소단위인 집락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임상연 등, 2014).

최근 '21년 3월, 일본은 「과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과소대책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0년부터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10년을 주기로 당시의 주된 상황과 대응 대책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왔다(「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1980),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1990),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2000) 등).

해당 법률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하되어있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 발전 및 고용기회의 확충, 주민복지 향상, 지역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로서 마련한 것이었다.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도모를 위해 도·도·부·현의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방침」 책정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16) 일본의 시정촌은 총 3회의 큰 합병이 있었다. '명치 대합병'(1888~1889년)으로 71,314개의 시정촌이 15,859개로 재편되었다. 1889년 이후에도 9,868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일본에 일본국 헌법이 1946년 제정되고 1947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정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소화 대합병'(1953~1961년)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1953년 9,868개이던 시정촌 수는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평성 대합병'이 이루어져 전국의 시정촌수는 1,727개로 재편되었다(이순태, 2011).

[일본의 지방인구감소 대응 정책 관련 법률]

구분		내용
지방창생 정책	법적근거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2014.11.)
	내용	○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설립(2014.12.) - 총리실 전담기구(본부장은 총리) - 광역지자체 및 시정촌 전담기구 ○ 지방창생 종합전략(1기(2015~2019), 2기(2020~2024)) - 지방 일자리 창출 - 지방으로의 이주 유도 - 지방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유도 - 지방의 생활권 보장
과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지원	법적근거	○ 과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지원 특별조치법(2021.4.1. 법률 제19호)
	내용	○ 과소지역 선정 - 인구 요건, 재정력 요건 고려 ○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방침 책정 규정(제7조) - 과소지역 이주 및 정주 - 지역 간 교류 촉진 및 인재 육성 - 산업진흥 및 관광개발 - 정보화, 교통정비, 생활환경 정비 - 육아환경 확보, 고령자 건강, 복지 향상 및 증진, 의료확보 - 교육진흥, 취락 정비, 지역문화 진흥,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추진

자료: 정윤선 외(2019),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입법동향과 시사점(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을 바탕으로 재정리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과소지역 이주 및 정주, 지역 교류 촉진, 인재 육성, 산업진흥, 관광개발, 정보화, 교통 및 생활환경 정비, 육아 환경, 고령자 건강 및 복지, 의료확보 등이 있으며, 동 법률의 효력은 2031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 도도부현이 주무대신과 협의하여 정한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방침에 기초하여 각각의 과소지역 지속발전 계획을 책정할 수 있고,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부담률 인상, 과소대책사업채의 발행, 시정촌 등의 도도부현에 의한 대행 정비사업 등의 특별조치를 계속 강구하는 한편 시정촌으로부터 제안이 있을 때 규제 재검토 등 배려조치를 내실화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지방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창생정책을 통해 국가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핵심과제로 삼았다는 점, 지방창생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자 중앙에 총리 직속의 지방창생본부를 별도로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방창생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또한 과소지역과 관련한 조치법을 통해 과소지역의 주민들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생활과 자립을 위한 방안을 지원하며 과소지역의 자립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자립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감소율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인구감소를 줄이고 도시 활력을 얻으려는 입법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조진우, 2020).

Ⅲ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위기가 심화될 것을 예상,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에 태어난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하는데, 이들이 20대 후반이 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는 20대 후반 인구가 한시적으로 증가[17]하는 구조를 보여, 노동시장 진입 시 구직경쟁이 심화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간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그쳐 민간부문 취업으로의 연계가 미약하였고,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분야의 일 경험, 지역현장에 대한 이해 등이 고려되지 않아 효과를 내는데 제약이 있었다. 지역의 취·창업은 일자리와 더불어 주거, 복지, 공동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한시적 일자리만으로는 청년 정착 유인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해 일할 청년이 없으며 많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봉착하였고, 그간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 일률적 사업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고용여건과 지역고용시장의 미스매치 원인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였다. 지자체의 경우 각종 자원의 부족으로 산발적, 소규모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17.12.) 등을 통해 지자체 일자리사업을 발굴, 사업의 유형화를 통해 국가시책 사업화를 준비하였고, 2018년 3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

17) 25~29세 인구증감(만명): ('17) +9.5 ('18) +11.0 ('19) +8.3 ('20) +5.5 ('21) +4.5 ('22) △3.8

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18]」을 발표하였다.

나. 추진 경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도 제1회 추경('18.5.21.)에서 신규 편성[19]을 통해 한시사업(사업기간 2018~2021년)으로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도록 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에게는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와 주거·복지 등의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 및 농어가에는 청년 노동력을 지원하여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을 육성하며 청년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주도의 타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된다. 중앙부처는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설계 및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추진에 앞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2017.12) 및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2018.3.)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우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권역별 현장토론회, 전문가 자문,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핵심 성공요인 분석과 사업유형별 모델화를 통해 3대 기본유형(지역정착지원형, 생태계조성형, 지역사회서비스형)을 설계하였다. 해당 기본 유형은 ①지역정착지원형,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③민간취업연계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2020년까지 유지되었고,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비대면·디지털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④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

---

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관계부처합동, 2018.3.15.)은 지역·현장 중심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로서 범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정착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 동 사업은 총사업비 1,198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831억원(2018년 기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나, 국무회의('18.4.3.)에서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고용 부진 심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나목).

형이 신설되었다.

[2018~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4유형)* (*2021년 도입)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예) 미술관 큐레이터, LPG가스점검	비대면·디지털 분야 예) AR/VR, AI, ICT 등 디지털 분야 직무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부는 당초 한시사업으로 추진('18~'21)하였던 동 사업을 2022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역혁신형(신규 1유형), 상생기반 대응형(신규 2유형; 2-① 소멸위기지역 창업, 2-② 창업성장플러스), 지역포용형(신규 3유형)으로 사업유형을 개편하여 운영 중이며, 기존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지역정착지원형(기존 1유형)과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기존 4유형)은 계속 지원[20] 중이다.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

구분	지역혁신형(1유형)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지역포용형 (3유형)
		지방소멸위기지역창업 (2-1유형)	창업청년 플러스 (2-2유형)	
취·창업 분야	지역인증기업, 지역혁신 주도산업분야 직무, 지역 균형뉴딜 연계산업 직무, 미래신산업분야 직무 등 관련 기업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의 창업	지역특화전략산업 및 지역장인육성 등 분야의 창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 사회공헌연계 직무 분야 기업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 기존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22년도 전체 지원 인원 25,880명 중 계속지원 인원은 9,880명임).

동 사업은 「청년특별대책(2021.8., 관계부처 합동)[21]」 내 추진과제로 수행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지원 수요와,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2]」에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신규유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3개 유형을 신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사업 내용

① 사업유형별 지원 내용

2018~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네 가지 기본유형(①지역정착지원형, ②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③민간취업연계형, ④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①유형, ③유형 및 ④유형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 '직접일자리 사업' 유형으로, 그리고 ②유형은 '창업지원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지역정착지원형' 사업[23]은 젊은 일손 부족으로 활력 제고가 필요한 지역기반의 법인 · 단체에 청년 미취업자를 1:1로 매칭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상자에게는 1~2년차에 연간 인건비 2,400만원(국비와 지방비, 기업부담 등 포함)과 교육 · 컨설팅 등 청년 대상 기타지원 사업을 1인당 300만원(국비와 지방비 등 포함) 수준으로 지원하고, 마지막 3년차에는 동 취업자가 해당지역에 정착하여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1,000만원(국비와 지방비 등 포함)의 인센티브[24]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해당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 기업은 해당 청년 임금의 일부(20%, 최소 10% 필수)를 부담해야 한다.

---

21) 「청년특별대책」은 3대 추진 방향(① 코로나 위기 극복 ② 격차 해소 ③ 미래도약 지원) 및 5대 분야(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를 설정하고 있다.

22) 기획재정부(2021)

23) 전라남도의 '마을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사업. '마을로 프로젝트'는 마을에 기반을 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4) 청년이 사업참여 기간 2년을 충족하고,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시·도 사업은 해당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하였을 경우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 균등하게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둘째,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25]은 창업공간 조성 및 임대료 지원을 통해 취·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공간을 조성(‘18년 기준 1개소 당 평균 9억원 지원함)하여 직접 신규창업을 지원하거나, 인건비 외 재료비·임차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1인당 평균 1,50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 및 교육·컨설팅 등 기타지원금(1인당 15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 수준)을 지원한다.

셋째, ‘민간취업연계형’ 사업[26]은 미취업자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안전, 복지, 문화, 환경 등)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 후 민간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이 장애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창업 연계사업이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인건비(국비 연 900만원 한도)와 별도의 직무교육 및 구직활동을 위해 연 200만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등을 지원한다. 일의 성격,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일제·시간제 근무형태를 보장하고, 근무지가 되는 기업(비영리법인, 단체 포함)은 임금의 일부(10%)를 부담해야 한다.

넷째,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유형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업유형은 비대면·디지털 기술활용 사업장에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1년 이내)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직무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비대면·디지털 기술관련 직무교육, 외부 전문기관교육을 통해 청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연간 1인당 인건비 2,400만원(국비와 지방비 등 포함)과 전문직무(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전담멘토 현장직무교육 등) 교육비 등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임금의 일부(10%)를 부담하도록 한다.

---

25) 순천시의 ‘청춘창고’를 벤치마킹한 사업. ‘청춘창고’는 활용도가 낮아진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사업가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다양한 점포를 유치하고 미팅룸, 공연장 등 부대시설도 갖추었다.

26)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뉴딜일자리’ 사업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공공일자리 지원, 직무역량 강화, 이후 민간 일자리 취업알선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비교]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4유형) (2021년~)
사업대상	연령	만 39세 이하			
	대상	미취업자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지역요건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목적	의의	지역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정착 유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및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부문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 연계	비대면·디지털 영역에서 일 경험 및 전문 교육을 통해 청년의 역량 향상
사업내용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예) 미술관 큐레이터, LPG가스점검	비대면·디지털 분야 예) AR/VR, AI, ICT 등 디지털 분야 직무
	지원 기간	2+1년 (3년차 취·창업 시 추가지원)	2년간 (취·창업 지원)	1년 이내 (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1년 이내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 경험 및 전문교육 후 취·창업 연계)
	지원 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 3년차 추가지원 ※ 자체 자체지원으로 청년 정주여건 지원	취·창업지원 : 인건비 외 (교육비, 임대료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 전담멘토 지원비,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등으로 구성
소요예산	1인당 단가	인건비 2,400만원 기타지원비 300만원	인건비 외 간접지원 1,500만원 기타지원비 150만원	인건비 2,250만원 (파트 1,125만원) 기타지원비 200만원	인건비 2,400만원 기타지원비 300만원
	보조율 (국비)	전국 50%, 서울 30% (기업부담분 20%)	전국 50%, 서울 30%	전국 40% (900만원 한도) (기업부담분 10%)	전국 50%, 서울 30% (기업부담분 10%)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1)

② **모든 유형에 공통 적용하는 자율지원사항**

각 사업유형에 대한 본 사업 예산 지원 이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체계획과 재원으로 추진하는 공통 자율지원사항이 존재한다. 자율지원의 내용은 크게 '지역정착지원'과 '청년의 지역 소속감 함양'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정착지원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주여건 개선을 의미하며, 교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 부산 드래곤밸리 청년 일자리의 경우 월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였고, 인천 창업기업 청년일자리는 복지포인트를 120만원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의 지역 소속감 함양을 위해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활성화된 모임에 참여를 지원하거나 지역 융화 교육, 전담매니저의 1:1 맞춤형 정착 지원 컨설팅, 참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재원을 이용하는 자율지원 사항은 그 내용,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충분한 수준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 선정 심사 및 성과관리 시 '충분한 수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지원 내용 미포함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사업 추진 체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탁기관을 사업운영 주체로 하여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따라 세부 사업을 설계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심사하여 세부 사업 선정 및 사업별 규모를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후 각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공모 및 접수, 청년 및 사업장 선발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은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지자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기도 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또는 지자체에서 위탁한 기관)에서는 사업 시행과 함께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본교육, 심화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킹을 위한 지원, 사업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인건비 외 지자체 자율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자체수행 또는 위탁수행)하는 사업을 총괄하는 등 시·도 및 시·군·구 청년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자체(또는 지자체에서 위탁한 기관)에서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17개 각 시도별 2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장 지도 ·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며, 의견수렴 및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조사에는 행정안전부 및 광역시도 담당자, 자문단 위원과 동행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청년모집 및 선발 단계에서의 공정성, 적합한 사업장 모집 및 선발, 일자리 질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및 사후조치, 청년의 일·경험을 위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근무환경, 사업장 문제점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만약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보조금 환수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사례 발생 및 청년에게 귀책이 없는 기타사유(폐업 등)로 청년이 계속근무가 어려울 경우, 희망 시 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추진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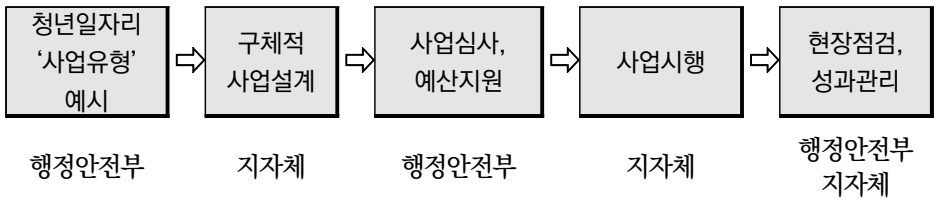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 운영주체별 책무]

주체	주체별 책무
행정안전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 사례 연구를 통한 기본유형 설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 - 대국민 홍보 등
광역자치단체	- 시·도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 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지원 예산 및 규모 결정 - 시·도 단위 사업의 공모와 참여자의 선발 - 시·도 내 우수사업 발굴 및 추천 - 시·도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및 시·군·구 자율지원 사업 지원 - 시·도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 기본교육 실시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감독 - 시·군·구 단위 사업의 공모와 참여자의 선발 - 시·군·구 내 우수사업 발굴 및 추천 - 시·군·구 자율지원 사업의 발굴·추진 - 필요한 경우 시·군·구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위탁기관	- 시·도 및 시·군·구의 단위 사업 추진 - 전담 매니저 운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네트워킹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1)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가. 사업 참여 현황 및 성과

① 유형별 참여인원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매년 2.6만명(2021년은 2.9만명)의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2018~2021년간 참여자 수는 총 116,748명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정착지원형이 68,363명(58.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4,062명(12.0%), 민간취업연계형은 24,489명(21.0%), 2021년 신설된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9,834명(8.4%)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별 참여자 수(2018~2021)]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인원	비율
전체		계	11,056	36,265	36,067	33,360	116,748	100.0%
		(신규)	11,056	25,924	13,977	16,205		
		(계속)	-	10,341	22,090	17,155		
유형	지역정착지원형	계	5,123	18,638	22,989	21,613	68,363	58.6%
		(신규)	5,123	13,056	18,301	15,079		
		(계속)	-	5,582	4,688	6,534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계	1,257	5,881	5,328	1,596	14,062	12.0%
		(신규)	1,257	4,886	1,974	-		
		(계속)	-	995	3,354	1,596		
	민간취업연계형	계	4,676	11,746	7,750	317	24,489	21.0%
		(신규)	4,676	8,083	1,703	-		
		(계속)	-	3,663	6,407	317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계	-	-	-	9,834	9,834	8.4%

주: 2020년 종료된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 2021년에는 기존 참여자에 대한 계속 지원만 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② **지역별 참여인원**

2018년에서 2021년간 총 참여자 중 수도권은 15,810명, 비수도권은 100,938명으로 비수도권 비중이 86.5%를 차지하였다. 시도별 비중은 경북이 11.9%(13,849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9.5%(11,092명), 전남 9.2%(10,775명), 경남 8.7%(10,194명), 부산 8.1%(9,440명) 순이었다. 각 유형별 참여 비중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의 경우 타 지역과는 달리 민간취업연계형의 비중이 높았다.

[시도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수('18~'21)]

(단위: 명)

구분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계	
					인원	비율
계	68,363	14,062	24,489	9,834	116,748	100.00%
서울	720	1,053	1,474	319	3,566	3.1%
부산	3,077	1,497	4,109	757	9,440	8.1%
대구	7,242	1,304	1,205	1,341	11,092	9.5%
인천	1,808	1,047	1,019	254	4,128	3.5%
광주	2,515	589	2,657	480	6,241	5.3%
대전	2,393	252	3,881	955	7,481	6.4%
울산	914	959	382	53	2,308	2.0%
세종	450	53	85	28	616	0.5%
경기	5,490	774	1,643	209	8,116	7.0%
강원	4,343	775	739	128	5,985	5.1%
충북	3,696	923	790	276	5,685	4.9%
충남	5,354	418	469	279	6,520	5.6%
전북	5,734	600	1,419	408	8,161	7.0%
전남	6,841	1,350	1,592	992	10,775	9.2%
경북	9,961	894	802	2,192	13,849	11.9%
경남	6,041	1,574	1,774	805	10,194	8.7%
제주	1,784	0	449	358	2,59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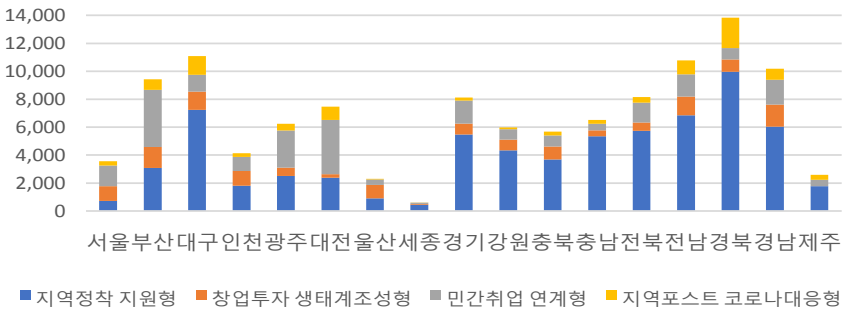

주: 총 참여자수 = 각 연도별 종료인원과 중도포기인원, 그리고 현원을 모두 포함함

자료: 행정안전부

③ 중도 탈락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18~'21년 참여자 11만 6,748명 중 중도 탈락한 인원은 2만 1,272명이었다. 전체 참여인원 중 중도 탈락한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중도 탈락률은 18.2%이었으며, 각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이 21.5%,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이 20.9%, 민간취업연계형은 15.6%,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인원 및 중도탈락률(2018~2021)]

(단위: 명)

구분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계
전체참여인원	68,363	14,062	24,489	9,834	116,748
중도탈락인원	14,694	695	3,827	2,056	21,272
중도탈락률(%)	21.5%	4.9%	15.6%	20.9%	18.2%

자료: 행정안전부

④ 주민등록 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2021)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사업 참여가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유지하는 것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27]. 이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에서 연도별 6.5%~10.1%가 타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주민등록 이전비율(2018~2021)]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사업지역 내 청년 참여 비율	93.5	92.0	89.9	91.3
주민등록 이전 청년 비율[1)]	6.5	8.0	10.1	8.7

주: 1) 주민등록 이전 청년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권역별 이동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비수도권이 21.3%, 비수도권→비수도권 68.2%, 수도권→수도권 8.1%, 비수도권→수도권 2.5%로 나타남

자료: 행정안전부

27) 다만, 자치단체장이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참여 기업 수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에 참여한 기업(청년 창업 유형인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제외)은 2019 ~2021년간 총 45,681개소이다. 2019년 13,147개소, 2020년 15,332개소, 2021년 17,202개소로, 참여 기업 수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한 기업이 3만 2,081개소(7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민간취업연계형은 8,742개소(19.1%),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4,858개소(10.7%)가 참여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수(2019~2021)]

(단위: 개)

구분	지역정착 지원형	민간취업 연계형[1)]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2)]	계
2019	8,539	4,608	-	13,147
2020	11,455	3,877	-	15,332
2021	12,087	257	4,858	17,202
계	32,081(70.2%)	8,742(19.1%)	4,858(10.7%)	45,681(100%)

주: 1) 2020년 폐지한 사업유형
2) 2021년 신설된 사업유형
1. 직접일자리 유형에 대해 파악한 정보로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해당없음
2. 합계 수치의 경우, 다년도 참여 기업 수는 중복하여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

⑥ 각 사업유형별 성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정착지원형(1유형)의 예상 정규직 전환율[28)]은 2021년 기준 66.5%이었다. 또한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2년의 사업 기간을 채운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 · 창업한 청년은 계속 정주기간에 따라 연간 최대 1,000만원(분기별 2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2,566명으로 전체 종료인원 5,318명 중 48.3%를 차지하였다.

28) 예상 정규직 전환율이란 채용 당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된 비율을 말하며, 실제 사업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과는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정착지원형(1유형)의 예상 정규직 전환율(2018~2021)]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예상 정규직 전환율	69.0	63.3	62.9	66.5

주: 예상 정규직 전환율은 채용 당시 정규직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전제로 채용된 비율로서, 실제 정규직 전환율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정착지원형(1유형) 인센티브 수령비율(2021)]

(단위: 명)

구분	2021년
기존사업 종료인원	5,318
인센티브 수령인원	2,566
비율	48.3%

주: 종료인원은 해당년도 이전에 채용되어 21년에 계약기간이 종료 된 인원수임

자료: 행정안전부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은 창업률을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예비창업자의 창업률은 2018년 85.9%, 2019년 68.7%, '20년 76.3%, 2021년 31.5%로 나타났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 예비창업자의 창업률(2018~2021)]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예비창업자수	838	2,487	1,152	270
신규사업자 등록수	720	1,708	879	85
창업률	85.9%	68.7%	76.3%	31.5%

주: 1. 창업률 = 사업자 등록수 / 예비창업자수 * 100
2. 예비창업자수에는 중도탈락인원 및 종료인원은 제외됨

자료: 행정안전부

단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민간취업연계형 및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의 취업 연계율은 2018년 42.6%, 2019년 42.1%이었고 2020년에는 64.4%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32.4%로 감소하였다[29].

[민간취업연계형(3유형) 및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4유형) 취업연계율(2018~2021)]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민간취업 연계형	민간취업 연계형	민간취업 연계형	민간취업 연계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계
지원종료인원	1,569	7,483	3,228	217	1,473	1,690
취업연계인원	668	3,151	2,080	99	449	548
취업연계율	42.6%	42.1%	64.4%	45.6%	30.5%	32.4%

주: 취업연계율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체에서 계속 고용 또는 타 일자리로의 이동한 비율이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지표의 고용유지율(사업 종료 후 6개월이상 취업유지 인원수)과는 다른 개념임

자료: 행정안전부

나. 사업비 집행 현황

사업비 편성은 유형별 지원내용 및 단가, 지방비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데, 각 유형별 국비 보조율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의 경우 전국 50%, 서울 30%로 정하고 있으며, 민간취업연계형은 전국 40%(900만원 한도) 기준으로 보조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은 청년의 임금(필수지원)에 대해서만 주어지며, 기업의 성격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가능하고, 조정된 기업부담분은 지방비로 계상이 가능하다[30].

29)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취업연계형은 2020년까지 대부분 종료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신규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이에 따라 2020년에 이미 취업을 연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21년에는 취업연계율이 감소하였고,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21년 한시적으로 추진된 단기일자리이기 때문에 타 유형 대비 취업연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30) 원칙적으로 청년의 임금에 한해서 1유형은 20%, 3·4유형은 10%가 기업부담에 해당하나,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업부담분 전액 지방비로 보전 가능함. 단, 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필수지원 내 기업부담분과 별개이며,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지원으로 편성 가능하다.

[사업유형별 보조율]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보조율 (국비)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20%	전국 50%, 서울 30%	전국 40% (900만원 한도) ※ 기업부담분 10%	전국 50%, 서울 30% ※ 기업부담분 10%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1)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청년을 지원하는 수준에 사업간 불필요한 차등이 없도록 하며, 예산의 편성과 관리는 세부사업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유형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을 기본 지원금(1,500만원)의 20% 이내 가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보조)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타지원비에 매니저 인건비, 위탁기관 운영비 등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경비를 편성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예산의 집행 시, 보조금은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매월 교부하도록 하는데, 자치단체장은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격월 및 분기별 또는 전액(2유형의 경우)을 미리 사업장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1]. 보조금은 청년의 근무 사실을 증빙하는 최소한의 자료를 토대로 기업에 먼저 지급되고, 기업이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있다.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으나, 경미한 사업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3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연도별 사업유형에 따른 국비 교부액은 다음과 같다. 2018년에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이 국비 교부액 중 가장 큰 비중(45%)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 이후에는 지역정착지원형(1유형)에 해당하는 교부액 비중이 가

3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32) 아래의 경미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추진 가능하다(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가. 집행잔액을 활용한 지원인원 확대
나. 자율지원 내 변경(항목 및 예산)
다. 사업비 총액의 변동없이 회계연도내 종료시점 조정 및 교부인원 확대하는 경우
라. 기타지원금 내 항목 간 예산변경
* 단, 예산의 변경으로 기타지원금 내 관리운영비 한도범위(10%)가 초과하는 경우 사전승인 대상

장 높았고('19년 63%, '20년 80%), 2021년에는 민간취업연계형(3유형) 비중이 거의 사라지고 지역정착지원형이 64%, 포스트코로나대응형(4유형)이 3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별 국비 교부액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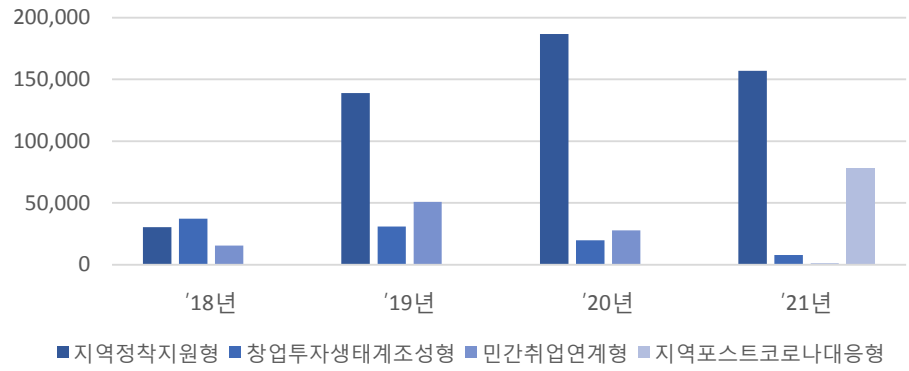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시도에 따라서도 각 사업유형별 국비 교부액의 비중에 차이가 컸으며, 연도에 따른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8년에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의 비중이 컸는데, 2019년, 2020년까지 점차 지역정착지원형(1유형)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 80% 내외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런 추이는 대구, 인천, 세종 및 도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2021년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4유형)이 신설된 이후에는 대구, 인천,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 지역정착지원형(1유형)의 비중이 다시 줄어들어 60% 내외를 차지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별 사업유형별 국비 교부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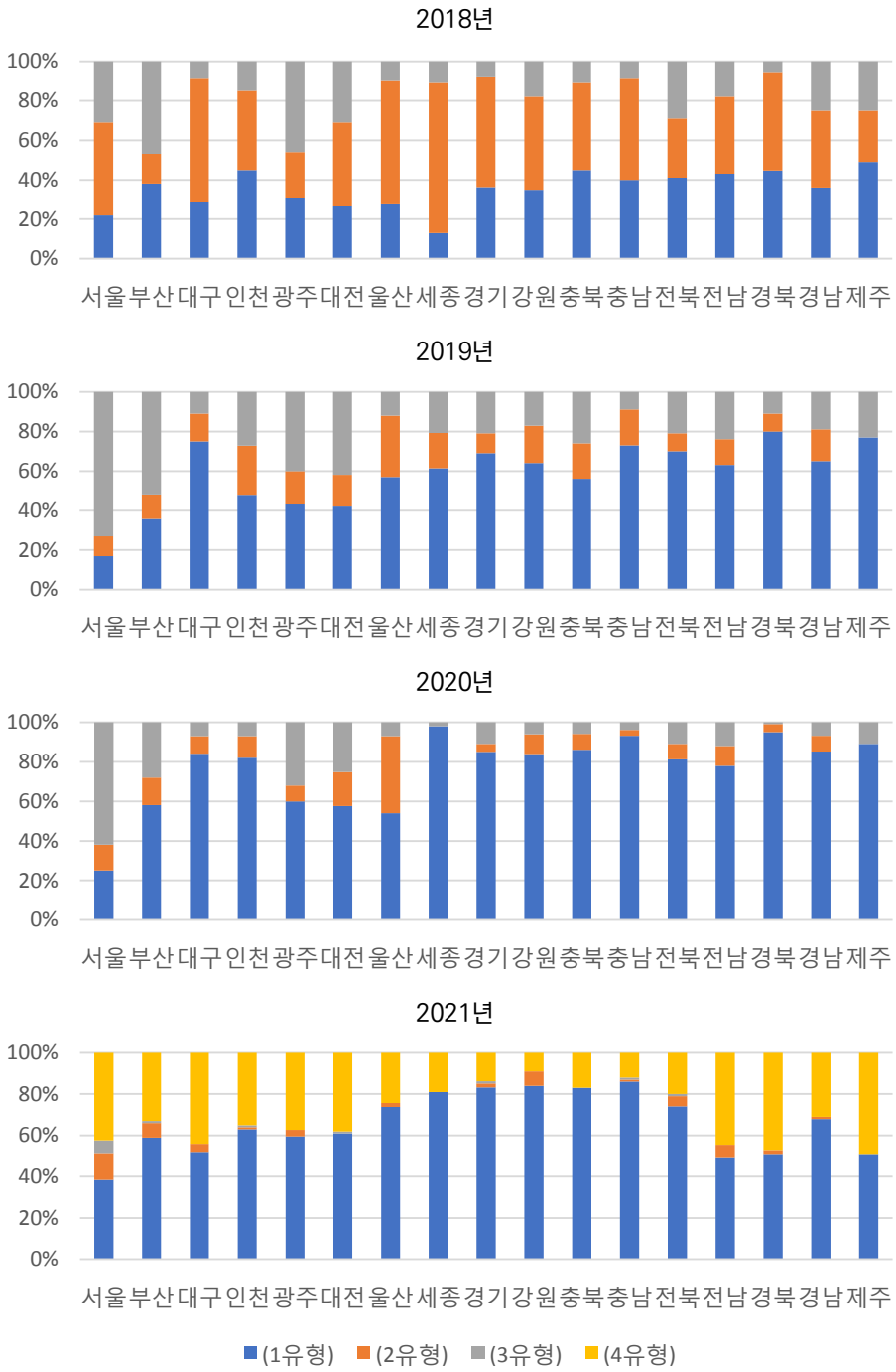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별 사업유형별 국비 교부액 및 비율]

(단위: 백만원)

연도	지역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4유형)
2018	서울	360 (22%)	759 (47%)	498 (31%)	-
	부산	1,178 (38%)	460 (15%)	1,438 (47%)	-
	대구	2,295 (29%)	4,830 (62%)	728 (9%)	-
	인천	1,364 (45%)	1,231 (40%)	453 (15%)	-
	광주	1,107 (31%)	825 (23%)	1,640 (46%)	-
	대전	1,688 (27%)	2,651 (42%)	1,986 (31%)	-
	울산	1,019 (28%)	2,281 (62%)	364 (10%)	-
	세종	115 (13%)	686 (76%)	102 (11%)	-
	경기	3,463 (36%)	5,306 (55%)	798 (8%)	-
	강원	1,399 (35%)	1,863 (47%)	694 (18%)	-
	충북	1,640 (45%)	1,625 (44%)	388 (11%)	-
	충남	1,829 (40%)	2,294 (51%)	417 (9%)	-
	전북	1,921 (41%)	1,417 (30%)	1,349 (29%)	-
	전남	5,164 (43%)	4,650 (39%)	2,172 (18%)	-
	경북	2,762 (45%)	3,064 (50%)	360 (6%)	-
	경남	2,653 (36%)	2,845 (39%)	1,796 (25%)	-
	제주	473 (49%)	250 (26%)	245 (25%)	-
	소계	30,429 (37%)	37,036 (45%)	15,427 (19%)	-
2019	서울	846 (17%)	519 (10%)	3,759 (73%)	-
	부산	4,572 (36%)	1,487 (12%)	6,741 (53%)	-
	대구	16,938 (75%)	3,183 (14%)	2,450 (11%)	-
	인천	3,895 (47%)	2,105 (25%)	2,257 (27%)	-
	광주	3,635 (43%)	1,401 (17%)	3,351 (40%)	-
	대전	4,904 (42%)	1,800 (16%)	4,888 (42%)	-
	울산	2,548 (57%)	1,400 (31%)	526 (12%)	-
	세종	873 (62%)	248 (18%)	293 (21%)	-
	경기	12,323 (69%)	1,759 (10%)	3,829 (21%)	-
	강원	8,231 (64%)	2,435 (19%)	2,173 (17%)	-
	충북	4,640 (56%)	1,527 (18%)	2,154 (26%)	-
	충남	7,071 (73%)	1,774 (18%)	871 (9%)	-
	전북	10,091 (70%)	1,296 (9%)	3,111 (21%)	-
	전남	17,082 (63%)	3,583 (13%)	6,359 (24%)	-
	경북	23,138 (80%)	2,618 (9%)	3,252 (11%)	-
	경남	14,239 (65%)	3,627 (16%)	4,137 (19%)	-
	제주	3,555 (77%)	- (0%)	1,066 (23%)	-
	소계	138,581 (63%)	30,761 (14%)	51,218 (23%)	-

연도	지역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4유형)
2020	서울	1,562 (25%)	827 (13%)	3,902 (62%)	-
	부산	9,659 (58%)	2,272 (14%)	4,652 (28%)	-
	대구	22,937 (84%)	2,405 (9%)	1,830 (7%)	-
	인천	4,290 (82%)	573 (11%)	369 (7%)	-
	광주	6,804 (60%)	890 (8%)	3,657 (32%)	-
	대전	6,127 (57%)	1,843 (17%)	2,691 (25%)	-
	울산	1,159 (54%)	838 (39%)	140 (7%)	-
	세종	1,502 (98%)	- (0%)	35 (2%)	-
	경기	15,841 (85%)	826 (4%)	2,051 (11%)	-
	강원	11,791 (83%)	1,482 (10%)	909 (6%)	-
	충북	10,519 (86%)	1,005 (8%)	770 (6%)	-
	충남	18,607 (94%)	550 (3%)	702 (4%)	-
	전북	18,007 (82%)	1,668 (8%)	2,375 (11%)	-
	전남	13,704 (78%)	1,796 (10%)	2,148 (12%)	-
	경북	34,314 (95%)	1,359 (4%)	444 (1%)	-
	경남	15,372 (86%)	1,398 (8%)	1,207 (7%)	-
	제주	4,735 (89%)	- (0%)	613 (11%)	-
	소계	196,929 (80%)	19,731 (8%)	28,493 (12%)	-
2021	서울	1,203 (38%)	421 (13%)	203 (6%)	1,325 (42%)
	부산	10,503 (59%)	1,168 (7%)	221 (1%)	5,784 (33%)
	대구	14,844 (52%)	1,233 (4%)	- (0%)	12,737 (44%)
	인천	3,861 (63%)	61 (1%)	64 (1%)	2,136 (35%)
	광주	5,969 (59%)	319 (3%)	16 (0%)	3,731 (37%)
	대전	5,559 (61%)	- (0%)	51 (1%)	3,433 (38%)
	울산	1,452 (73%)	40 (2%)	9 (0%)	484 (24%)
	세종	960 (81%)	- (0%)	- (0%)	225 (19%)
	경기	12,884 (84%)	281 (2%)	133 (1%)	2,082 (14%)
	강원	10,230 (84%)	824 (7%)	2 (0%)	1,095 (9%)
	충북	11,084 (83%)	- (0%)	- (0%)	2,194 (17%)
	충남	17,168 (86%)	272 (1%)	107 (1%)	2,417 (12%)
	전북	15,419 (74%)	1,130 (5%)	115 (1%)	4,269 (20%)
	전남	9,634 (50%)	1,088 (6%)	- (0%)	8,659 (45%)
	경북	19,351 (51%)	815 (2%)	21 (0%)	17,605 (47%)
	경남	13,657 (68%)	197 (1%)	16 (0%)	6,258 (31%)
	제주	3,430 (51%)	- (0%)	- (0%)	3,299 (49%)
	소계	157,208 (64%)	7,849 (3%)	957 (0%)	77,734 (32%)

주: 국비 교부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정부가 재난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대책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대책(2018.3.15.)」의 주요사업을 즉시 시행하기 위해 추진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8.4.6. 제출, '18.5.21. 국회 의결)을 통해 처음 예산을 반영하였다. 추진배경에는 청년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청년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역일자리 7만개 이상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는 1만 4,000여명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10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심사과정에서 274억 500만원 감액하여 830억 7,200만원을 확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공모 및 심사를 거쳐 1만명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당해 6월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전액(828억 9,2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지자체는 참여자 모집 등 사업절차 이행과 지방비 매칭을 위한 추경 편성(2018.9월 완료)이 지연되면서 교부액 중 342억 2,500만원(41.3%)을 집행하는데 그쳤고, 455억 8,700만원(교부액의 55%)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억 8,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년에는 2만명의 일자리를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본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8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을 통해 123억 6,000만원 증액한 2,209억 9,400만원을 확정하였다. 지자체는 교부액 2,205억 5,9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455억 8,7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2,661억 4,600만원 가운데 74.9%인 1,99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3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은 344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2020년에는 본예산 2,350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자치단체 보조금 2,341억 4,0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지자체는 전년도 이월액 323억 6,7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2,665억 800만원 가운데 2,361억 1,700만원(88.6%)을 집행하고, 108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5억 2,0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년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편성하였다. 이후 제2회 추경(2021.7.24. 국회 확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 사업유형 중 지역정착지원형의 추가 지원인력(3,00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00억 4,400만원 증액한 2,450억 4,700만원을 확정하였다.

지자체는 보조금 2,441억 9,900만원을 교부받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2,550억 7,000만원 가운데 2,188억 2,400만원(85.8%)을 집행하였으며, 157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5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행정안전부)[1]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8	-	83,072	83,026	82,892	-	82,892	34,225	45,587	3,080	41.29%
2019	208,634	220,994	220,837	220,559	45,587	266,146	199,339	32,368	34,439	74.90%
2020	235,003	235,003	234,899	234,140	32,368	266,508	236,117	10,871	19,520	88.60%
2021[2]	235,003	245,047	244,981	244,199	10,871	255,070	218,824	15,717	20,529	85.79%

주: 1) 부처 예산액 및 집행액은 자치단체보조금과 직접사업비를 합한 금액임

2) 2021년 지자체 집행액, 불용액 및 실집행률은 현재 정산중으로, 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유형별 결산 현황을 재원분담주체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정착지원형은 2018~2021년까지 4년간 국비 2,985억원(39%), 지방비 3,723억원(49%), 기업 961억원(12%)을 부담하였고,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은 4년간 국비 621억원(48%), 지방비 682억원(52%)을 부담하였다.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에는 국비 763억원(38%), 지방비 1,102억원 (55%), 기업이 123억원(6%)을 부담하여 타 유형에 비해 지방비의 부담 비율이 높았으며, 2021년에 신설된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은 국비 659억원 (52%), 지방비 475억원 (37%), 기업 137억원(11%)을 부담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비율)
지역정착 지원형	국비	14,039	104,811	166,433	13,256	298,539 (39%)
	지방비	9,175	106,413	140,271	116,473	372,332 (49%)
	기업부담	3,352	26,222	36,810	29,728	96,112 (12%)
	총계	**26,566**	**237,446**	**343,514**	**159,457**	**766,983 (100%)**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국비	10,760	25,627	18,279	7,454	62,120 (48%)
	지방비	10,223	30,859	19,329	7,776	68,187 (52%)
	기업부담	-	-	-	-	-
	총계	**20,983**	**56,486**	**37,608**	**15,230**	**130,307 (100%)**
민간취업 연계형	국비	9,426	42,267	23,897	724	76,314 (38%)
	지방비	12,432	57,348	38,173	2,202	110,155 (55%)
	기업부담	456	6,131	5,389	350	12,326 (6%)
	총계	**22,314**	**105,746**	**67,459**	**3,276**	**198,795 (100%)**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국비	-	-	-	65,851	65,851 (52%)
	지방비	-	-	-	47,463	47,463 (37%)
	기업부담	-	-	-	13,742	13,742 (11%)
	총계	**-**	**-**	**-**	**127,056**	**127,056 (100%)**

주: 1.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금액 기준이며, 직접사업비는 제외.

2. 국비, 지방비 및 기업부담은 실제 집행액임('21년은 정산중으로, '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산완료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Ⅳ 주요 쟁점 분석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설계 및 합목적성

가. 사업성과 관리체계 개선 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사업참여자 수의 합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일자리 창출 수'를 사업실적 및 성과로서 관리하고 있으나,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소멸 완화'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해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을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역혁신형(2022년)과 지역정착지원형(2018~2021년)의 경우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역 내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을 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간 총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조건과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동 사업의 목적이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에 있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동 사업은 사업성과로서 '일자리 창출 수'라는 단일지표만을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

사업성과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수 (단위:만명)	목표	1.19	2.32	2.21	2.36	2.59	Σ(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수)	행정안전부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실적	1.097	3.64	3.6	-	-		
	달성도 (%)	92	157	163	-	-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안(2022)

이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33]인 고용유지율이나 창업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알기 어렵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청년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의 효과성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4]

동 사업의 성과 측정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합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달성도는 목표인원 대비 실적인원의 비율로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표에서 참여자의 12.6~20.0%에 달하는 중도탈락자 수까지 사업실적(참여자 수)에 포함시킴에 따라, 동 사업의 6개월 고용유지율(38.4%)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턴형 전체 52.1%, 고용장려금 전체 81.2%, 고용창출형 전체 73.1%)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실적이 목표를 크게 초과하는 등 사업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도 탈락률]

(단위: %)

사업유형	2018	2019	2020	2021
지역정착지원형	13.60	25.40	24.40	16.90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4.40	5.50	9.30
민간취업연계형	11.50	16.60	16.60	16.10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	-	20.90
합계	**12.60**	**19.10**	**20.00**	**17.70**

자료: 행정안전부

33)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주요 평가지표]

사업유형	세부유형	평가지표
직접 일자리	공통, 소득보조형	취약계층 참여비율, 참여자 만족도
	공공업무지원형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인턴형	인턴형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창업지원	공통	지속고용 사업장 비율, 고용창출 기업비율, 만족도
	창업초기 지원형	창업률
	창업금융형, 인프라 지원형, 사업화지원형	고용증감률, 임금수준

34) 2021년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인 '청년의 지역정착'에 대한 내용이 성과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과 함께, 사업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의 고용유지율(6개월) 비교(2021)]

(단위: %)

구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		
		인턴형 전체	고용장려금 전체	고용창출형 전체
고용유지율(6개월)	38.4	52.1	81.2	73.1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21)」

즉, 예산의 지자체 실집행률이 85.8%('21.12월 기준)로서 계획된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었음에도, 사업실적(참여자 수) 달성률이 100%를 초과(2020년 기준으로 163% 달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목표 설정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일자리 유지율이 좋지 않음을 의미[35]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집행률]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1)]
예산 실집행률(B/A)	41.3	74.9	88.6	85.8

주: 1) 2021년 추진실적은 2021.12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실질적인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와 함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지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질적 성과와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고용유지율 및 창업률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는 이 사업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사업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5) 예를 들어 사업실적(참여자) 달성률의 경우, 사업 계약기간 완료 인원 수, 일정기간 이상 계약을 유지한 인원 수, 또는 '계획인원 수×12개월'을 분모로 하고 'Σ(전체 참여자의 총 지원 개월 수)'를 분자로 하는 등 성과지표가 클수록 실제 사업의 성과가 양호하였음을 반영하고 일자리의 지속성 또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자체 자율지원 사항에 대한 추진체계 개선 필요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함께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주여건을 파악하고 적극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자율지원사항은 청년이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자율지원사항의 내용은 지원목적에 따라 주거 및 교육, 소득, 생활편의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사업과 지역 모임참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소속감 함양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자율지원 내용]

목적	사업내용
지역정착지원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정착지원금, 주거임차료 등) 및 교육, 소득, 생활편의 등 복지서비스 제공
청년의 지역소속감 함양	지역사회 모임 참여 지원, 지역융화 교육, 맞춤형 정착지원 컨설팅, 지역청년 및 지역사회화의 네트워킹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2022)

[지자체 자율지원 예시]

정착지원(자율지원) 예시
❍ (주거)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 예) (경북형 혁신 강소기업&밀레니얼-Z 링크 UP! 활력 UP!) 정착지원금 연 200만원 (부산 데이터산업 성장촉진 청년일자리) 주거임차료 등 연간 100만원 ❍ (복지) 교육·소득·생활편의 등 공공서비스 제공 * 예) (전북 익산 청년 알부자 일부자) 교통비 1인당 연간 100만원 (충남 서산 친환경 자동차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명절휴가비 50만원교통비 연간 100만원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청년사랑 프로젝트 포인트 연간 120만원 ❍ (네트워킹) 청년 간, 청년-지역사회 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 예) (부산 비대면 산업 청년일자리) 참여자간 정보공유 온 오프라인 네트워킹 (대전 패션전문가(커리어-업) 직업역량 강화) 패션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자료: 행정안전부

자율지원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사업의 내용, 규모, 방식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충분한 수준으로 지자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사업선정 심사 시 평가 요소 중의 하나로서 '충분한 수준'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36].

자율지원항목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비 규모를 보면, 2021년 기준 자율지원 사업비는 623억원으로 같은 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총사업비(4,734억원) 중 13.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형별 총 사업비 대비 자율지원 사업비의 비중은 2유형이 23.8%로 가장 높았고, 3유형(16.7%), 1유형(12.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율지원 관련 예산(2021)]

(단위: 억원)

구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합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등)	2,956	164	27	1,586	4,734
별도 자율지원 예산 (지자체 별도 재원)	379	39	4.5	201	623
총 사업비 대비(%)	12.8%	23.8%	16.7%	12.7%	13.2%

주: 2021년 본예산 확정통보 기준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 변동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지방이주 선호도 조사 및 지원정책 수요조사[37] 결과, 수도권에서 지방 중소도시나 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의 이주나 정착을 고려했던 청년들은 이주 초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일자리 정책(43.6%)을 꼽았고, 지역 정주여건에 해당하는 정책이 39.8%(주거지원은 26.0%, 정착비와 교통비, 생활비 일부를 지원 11.3%,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멘토지원 2.5%)를 차지하였다.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청년들이 지역 정착에 있어서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주 여건이라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주거지원 및 정착비 지원 등은 지역 정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

36) 세부사업 심사 기준은 타당성(20점), 독창성(20점), 효과성(20점), 지자체 추진의지(20점), 사업 필요성(20점)으로 이루어지며 '지자체 추진의지' 항목에 '자율지원 사업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심사 후 총 배점 순위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지자체 계획대로 시행, 계획의 50% 이내로 조정, 계획의 30% 이내로 조정, 사업 배제 등)하고 있다.

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도권 거주 미혼 청년(만19~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내용이다(조사기간 2020.8.17.~8.30).

[청년의 비수도권 이주 초기 필요한 지원]

(단위: %)

구분	전체	중소도시	소도시·농어촌
지역 내 일자리 찾기 (취업, 취농, 창업 알선 등)	43.6	42.8	47.7
정보제공 (지방이주나 정착과정,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 등)	7.4	8.1	3.5
지역체험 (일주일 살아보기, 한달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 등)	9.2	9.0	10.5
주거지원 (청년쉐어하우스, 청년 행복주택 등)	26.0	26.1	25.6
멘토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 등)	2.5	2.7	1.2
정착비나 교통지원 (생활비 일부 또는 교통비, 대체차량 지원 등)	11.3	11.3	11.6

주: 표본 수는 전체 530명, 중소도시 444명, 소도시·농어촌 86명임
자료: 박진경 외(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업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으로 응답한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해당지역 정착'이었으며(2019년), 실제로 참여 청년들이 임금 이외에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으로 응답한 것은 주거지원(36.0%) 및 교통 수당(26.1%)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응답한 내용은 참여하고 있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역정착지원형(1유형)의 경우 주거 지원(39.3%), 교통 수당(28.4%), 직업훈련(11.6%), 관심분야 컨설팅 및 멘토링(10.8%)의 순이었고,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4유형)은 주거지원(29.1%), 교통수당(26.2%), 그리고 관심분야 컨설팅 및 멘토링(16.1%), 직업훈련(15.9%)의 순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유형에서는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필요한 지원 항목이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2유형)의 경우에는 주거지원(32.2%), 관심분야 컨설팅 및 멘토링(25.9%), 지역사회 네트워크(20.4%)등의 순으로 나타나, 타 취업지원 사업유형과는 지원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요소가 달랐다.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사업유형에 따라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원요소를 파악하고 지원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사업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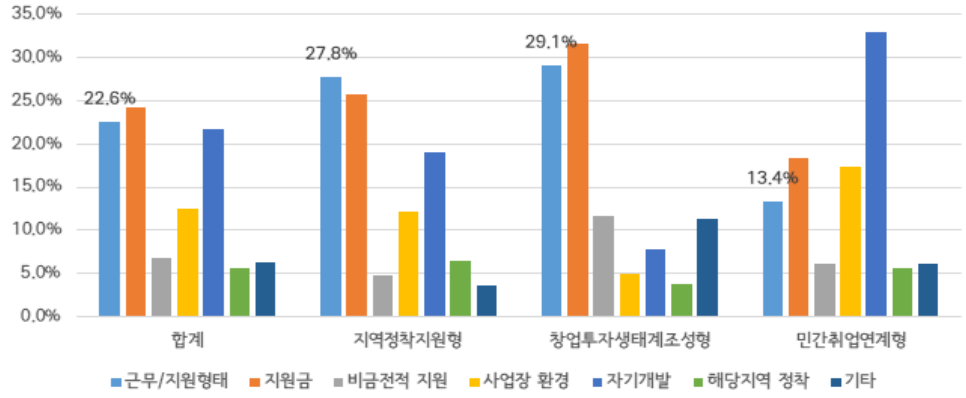

주: 2019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총 응답자수 721명)
자료: 행정안전부

[지원금(임금) 외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지역정착 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2유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4유형)
주거지원	**36.0**	**39.3**	**32.2**	**29.1**
교통수당	**26.1**	**28.4**	10.4	**26.2**
관심분야 컨설팅 및 멘토링	**13.6**	10.8	**25.9**	**16.1**
직업훈련	12.2	**11.6**	6.3	15.9
지역사회 네트워크	6.0	4.7	**20.4**	3.8
인턴십 체험	4.4	3.6	4.4	6.6
기타	1.6	1.6	0.4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2021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임
2. 표본 수는 전체 2,766명(1유형 1,803명, 2유형 270명, 4유형 684명 포함)
3. '민간취업 연계형(3유형)'은 대상자 수가 매우 작은(9명) 관계로 유의미하지 않아 미표기함
자료: 행정안전부

둘째,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자율지원 예산 수준 및 집행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사업 참여자 모집 시 표준화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에게 제공하는 자율지원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율지원 예산 또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2021년 사업 참여 청년에게 지자체 재원으로 자율지원한 연간 자율지원 예산은 정산중인 일부 4개 지자체(2022년 4월 기준)를 제외하고 총 355억원이었으며, 인당 자율지원 예산은 약 139.6만원 수준이었다. 지자체에 따라 자율지원 예산에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참여자 1인당 평균 19만원이었고, 광주 71만원, 울산 80만원 등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전의 자율지원 예산은 1인당 465만원, 대구 217만원 등으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자율지원 사항의 차이는 각 지자체의 지원요소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별 연간 자율지원 예산(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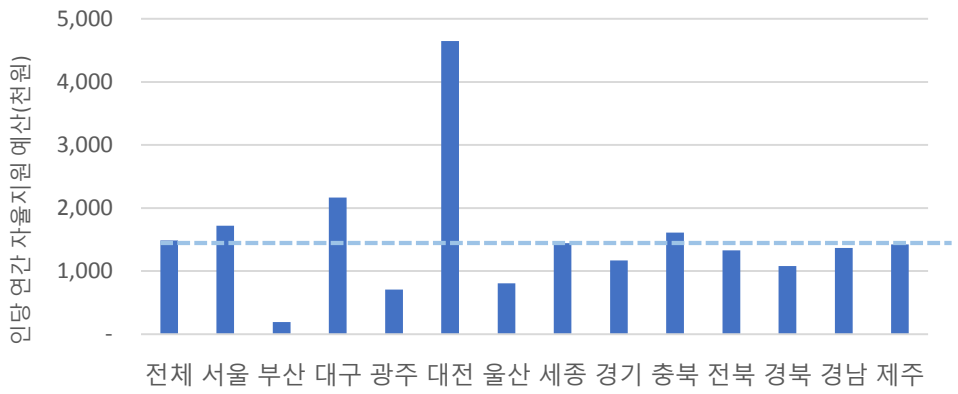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자체별 인당 자율지원 예산(2021)]

구분	총 참여자수(명)	자율지원 연간예산(억원)	인당 자율지원 예산(천원)
서울	752	12.9	1,717
부산	2,467	4.7	191
대구	3,733	80.9	2,167
광주	1,477	10.4	705
대전	1,640	76.2	4,648
울산	360	2.9	804
세종	170	2.5	1,443
경기	1,816	21.2	1,169
충북	1,652	26.6	1,608
전북	2,500	33.2	1,327
경북	5,409	58.3	1,079
경남	2,501	34.2	1,368
제주	981	14.0	1,422
계	25,458	378.0	1,485

주: 1. 총 참여자수 = '21년 종료인원과 중도포기인원, 그리고 현원을 모두 포함함
2. 자율지원 예산은 2021년도 정산 시 제출자료 기준임
3. 일부 지자체(인천, 강원, 충남, 전남)는 현재 정산중으로 포함되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지원한 자율지원 예산은 연도별로도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2018년의 자율지원 예산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 2018년에서 2021년의 기간 동안 아래 제시된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1인당 연간 22만원에서 많게는 393만원까지 자율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2018~2021년간 연도별 편차가 존재하였는데 그 편차가 적게는 47만원(강원)에서 많게는 372만원(광주)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율지원 내용에는 주거비, 교통비 등의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교육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의 많고 적음을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1인당 자율지원액 추이(2018~2021)]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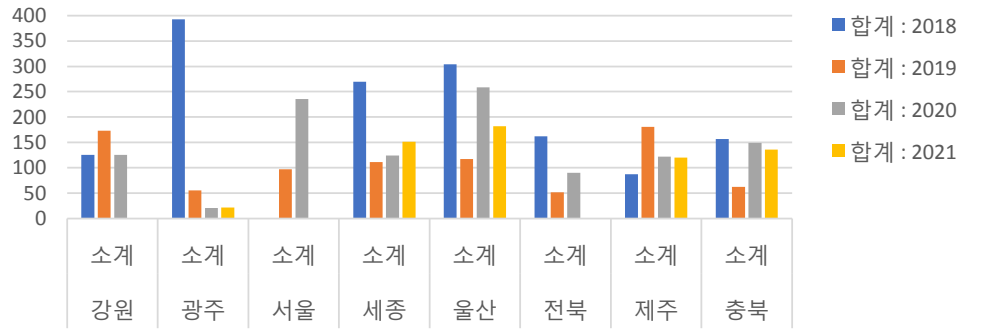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부 지자체의 '지역정착지원형' 1인당 자율지원액 추이(2018~2021)]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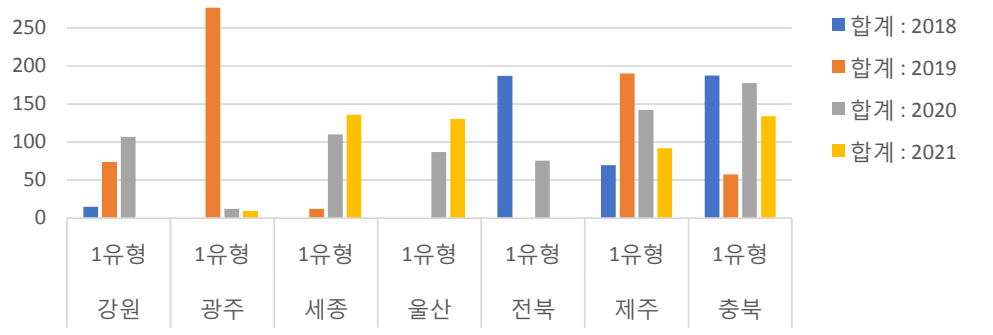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상 인건비 등을 제외한 지원사항은 각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및 사업에 따라 지원사항도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생활비와 주거비, 교육, 훈련, 네트워킹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 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지원비, 홍보 및 컨설팅비, 수행기관의 수행인력 인건비 등도 자율지원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지원사항이 과연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원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자율지원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38].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지원 사항에 대해 일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자율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자율지원 예산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성과관리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에서 자율지원 예산에 대한 사항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자율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자율지원 사항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안에서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지원 내용을 구성하되 자율지원 예산 수준 및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하도록 사업지침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지자체의 사업 수행 결과보고 시 각 지자체가 자율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 책정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에서 보고하였던 자율지원 예산(본예산 기준)과 확정 예산의 차이가 크므로,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통하여 자율지원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안내하고, 각 지자체는 사업계획서상 적정 수준의 자율지원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보고하였던 자율지원 예산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2018년 316억원, 2019년 830억원, 2020년 412억원, 2021년 395억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조정하여 반영한 확정예산은 계획예산의 60%(2018년), 45%(2019년), 89%(2020년), 92%(2021년)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 따라서도 계획 대비 확정 자율지원 예산액의 비중에는 큰 편차가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부산, 광주, 울산, 대전, 울산, 세종, 충북의 경우에는 100% 이상이었으나, 80%에 못 미치는 수준인 지자체도 존재하였다. 또한 2018~2020년도의 자율예산 평균적인 집행률(지자체 확정 본예산 대비 집행액)인 80~81% 수준을 감안한다면 실제 집행된 자율지원 예산은 계획되었던 예산액을 더 밑돈다고 할 수 있다.

38) 일부 지자체의 자율지원 사항 중에는 수행기관 매니저 인건비, 사업대행 수수료, 일터 조성 사업비, 연계사업 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시설 운영 지원 등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사항과는 다소 동떨어진 자율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별 자율지원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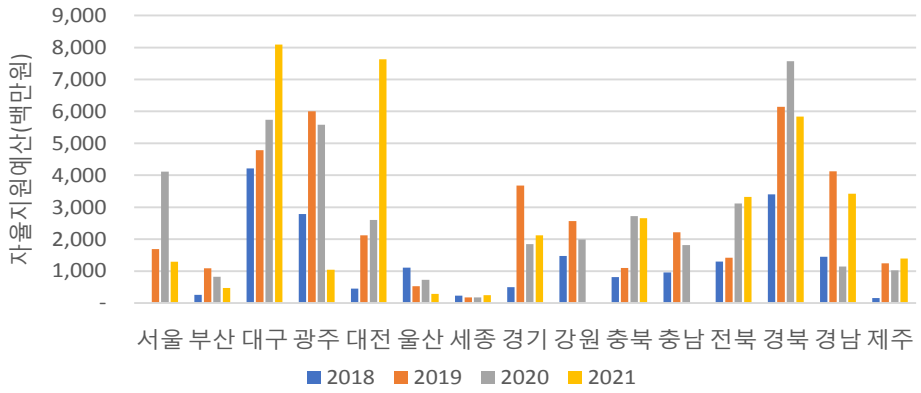

주: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지자체(인천, 전남) 및 일부 누락된 연도(서울(2018), 강원(2021), 충남(2021))는 표시하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자체별 자율지원 계획예산 대비 확정예산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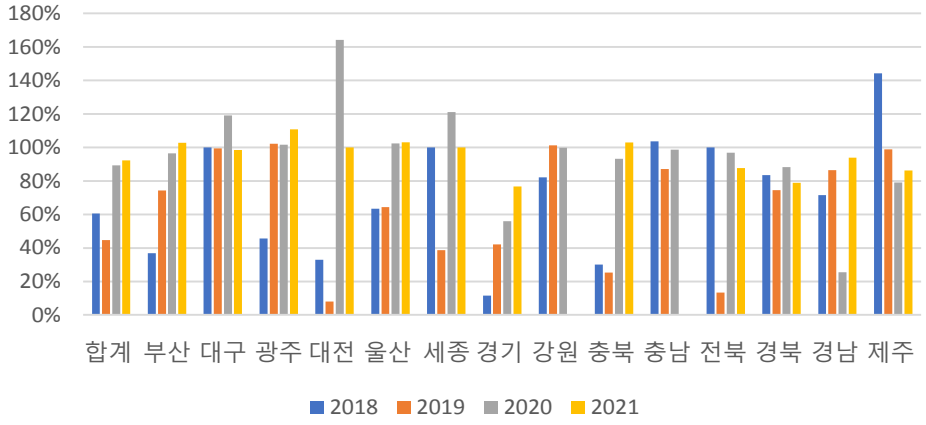

주: '합계'는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지자체(서울, 인천, 전남, 강원 일부, 충남 일부)를 제외한 금액으로, 총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자체별 자율지원 계획예산과 확정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계획예산(A)	확정예산(B)	비율(B/A)	계획예산(A)	확정예산(B)	비율(B/A)
합계	31,590	19,093	60%	83,016	37,177	45%
부산	690	254	37%	1,465	1,089	74%
대구	4,217	4,217	100%	4,810	4,783	99%
광주	6,107	2,790	46%	5,881	6,005	102%
대전	1,360	449	33%	26,417	2,122	8%
울산	1,743	1,107	63%	814	523	64%
세종	229	229	100%	444	172	39%
경기	4,303	494	11%	8,732	3,677	42%
강원	1,790	1,472	82%	2,531	2,562	101%
충북	2,714	813	30%	4,327	1,095	25%
충남	927	961	104%	2,541	2,213	87%
전북	1,301	1,301	100%	10,777	1,425	13%
경북	4,079	3,405	83%	8,241	6,140	75%
경남	2,024	1,449	72%	4,774	4,123	86%
제주	106	153	144%	1,262	1,249	99%
구분	2020			2021		
	계획예산(A)	확정예산(B)	비율(B/A)	계획예산(A)	확정예산(B)	비율(B/A)
합계	41,225	36,869	89%	39,547	36,508	92%
부산	851	822	97%	460	472	103%
대구	4,823	5,741	119%	8,212	8,091	99%
광주	5,490	5,579	102%	939	1,041	111%
대전	1,580	2,597	164%	7,623	7,623	100%
울산	709	726	102%	281	290	103%
세종	145	176	121%	245	245	100%
경기	3,292	1,840	56%	2,771	2,123	77%
강원	1,999	1,995	10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충북	2,922	2,724	93%	2,582	2,657	103%
충남	1,843	1,818	99%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전북	3,216	3,118	97%	3,780	3,317	88%
경북	8,571	7,569	88%	7,394	5,834	79%
경남	4,494	1,145	25%	3,645	3,420	94%
제주	1,290	1,020	79%	1,617	1,395	86%

주: '합계'는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지자체(서울, 인천, 전남, 강원 일부, 충남 일부)를 제외한 금액으로, 총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사업시행지침에서는 '지역정착지원 : 본 사업 예산 외 추가적으로 지자체 재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 또는 기존사업 연계 지원'과 '청년의 지역 소속감 함양 :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활동 지원, 청년 간, 청년-지역사회 간 네트워킹 지원'으로 지원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조정, 또는 지자체 자체 조정을 거치면서 계획 예산과 확정예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당초 계획되었던 자율지원 내용 및 예산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침을 통하여 자율지원 사항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계획 시 사업 참여 청년 수와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예산 수준을 책정하도록 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항 중 청년의 임금은 전 지자체가 동일하지만 자율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지자체별 지원사항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청년이 참여할 사업을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는 사업 참여자 공고 시 각 사업의 자율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사업별 비교· 선택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계속 추진 적정성 재검토 필요

첫째, 동 사업은 현재 '청년 인구 일시적 증가'라는 한시사업 추진의 명분이 사라진 상태이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새롭게 추진된 신규 유형은 기존사업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위원회에서 인구구조적 요인과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구조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역의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즉, 에코붐 세대[39]가 20대 후반에 접어듦에 따라 본격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18년 이후 3~4년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할 것(9.8%에서 12%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함께 심화되어 실업의 장기화, 인적자본 손실, 국가 성장능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에코붐 세대의 20대 후반 유입 기간 중('18~'21년)[40] 추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당초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청년 실업률 우려에 따라 '17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이용하여 '18~'21년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 사업이다.

그러나 '에코붐 세대인 청년 인구의 일시적 증가' 추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명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이용하여 25세~29세의 청년 인구를 살펴보면 2018년 349만명에서 2021년 367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사업에서 대상 연령으로 보고 있는 39세까지로 확장하여 살펴보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095만명, 2020년 1,082만명, 2021년 1,065만명으로 이미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2년 이후에도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8년 한시사업 추진 단계에서 제시하였던 '일시적 청년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률 악화'라는 환경적 요인은 약화 된 상황이다.

---

39)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에 태어난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40) 25~29세 인구증감(만명): ('17) +9.5 ('18) +11.0 ('19) +8.3 ('20) +5.5 ('21) +4.5 ('22) △3.8

[청년인구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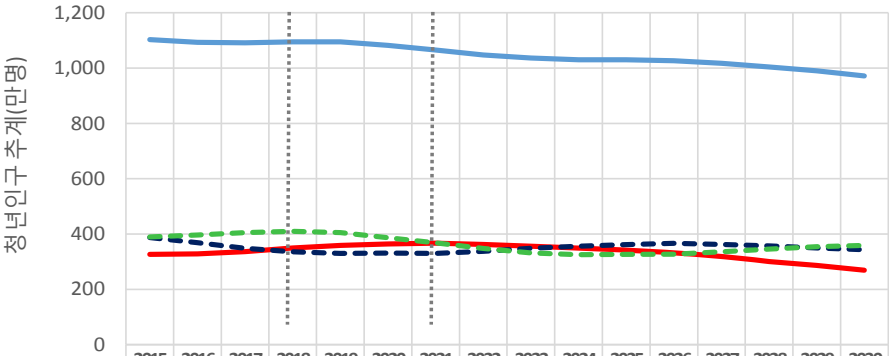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5-29세	327	328	337	349	359	365	367	362	356	348	342	333	318	301	287	269
30-34세	387	369	349	336	331	331	330	338	348	356	361	366	363	357	349	343
35-39세	389	396	405	410	405	387	368	347	332	326	326	327	336	346	354	359
25-39세계	1,103	1,093	1,091	1,095	1,095	1,082	1,065	1,048	1,037	1,030	1,030	1,027	1,017	1,004	990	97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행정안전부는 '22년부터 사업유형을 개편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계속 추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1년 9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수행하였다.

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고서(기재부)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2022년 이후에는 기존 참여자의 연차지원액만 예산에 반영하는 높은 수준의 '감축'을 하도록 평가하였고, 재추진할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기한 이후 환경 변화와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유형으로 추진하고, 이에 앞서 전략적 중장기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2년 예산안 편성에서 당초 설정한 기한 이후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유형 개편 및 예산을 책정하여 2022년 사업을 운영중에 있다[41].

41)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말에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2022년도 용역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기재부) 평가 결과]

구 분	총 평
평가 결과 및 평가 근거	(감축) - 2018년~2021년간 4년 한시사업으로, 2022년 이후는 기존 참여자의 연차지원액만 예산에 반영하는 높은 수준의 감축. 신규사업으로 재추진할 경우에는 신규 유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선행 필요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1)」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규 유형은 기존의 사업유형과 대동소이하여,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태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규 1유형(지역혁신형)은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 성장 주도 지원의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1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비슷하다. 취업 분야를 미래 신산업, 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보이나, 기존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 비대면·디지털 분야)이 기존 1유형에 융합된 형태로 판단되며, 신규 1유형의 지원내용 또한 기존 1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기존 3유형(민간취업연계형)은 직무경험을 쌓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등의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신규 3유형(지역포용형)과 다르지 않으며 단기성(1년) 일자리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기존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의 경우 신규 2유형으로 추진 시 소멸위기 창업(신규 2-1유형)과 창업성장 플러스(신규 2-2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2-1유형에서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는 점, 2-2유형에서는 창업 초기 청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유형은 신규 유형으로 지원하는 인원 중 15%의 비중을 차지하여, 나머지 85%의 신규 유형은 기존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유형과 신규 사업유형의 비교]

기존 유형 (~'21)	유형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유형)	민간취업연계형 (3유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4유형)
	목적	지역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정착 유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및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부문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 연계	비대면·디지털 영역에서 일 경험 및 전문 교육을 통해 청년의 역량 향상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신규창업 및 민간기업(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예)미술관 큐레이터,LPG가스점검	비대면·디지털분야 (예) AR/VR, AI, ICT 등 디지털 분야 직무
신규 유형 ('22~)	유형	지역혁신형 (1유형)	지방소멸위기지역창업 (2-1유형)	창업청년 플러스 (2-2유형)	지역포용형 (3유형)
	목적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소멸위기지역 신규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서울 외 지역 창업 초기 청년의 성장, 정착지원	직무 경험,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취·창업 분야	지역인증기업, 지역혁신주도산업분야, 지역균형뉴딜 연계산업, 미래신산업분야 등 관련 기업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의 창업	지역특화·전략산업 및 지역장인육성 등 분야의 창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공헌연계 직무 분야 기업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1, 2022)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청년 인구 증가율 감소의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였을 전략적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 판단되는 2022년 사업유형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에 따라 추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침의 전반적 검토 및 구체화, 사업 공모,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효과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계속사업으로의 추진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참여 기업과 청년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발휘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동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기업 중에는 이미 예정된 충원 계획이 있었는데 동 사업을 인지하게 되어 지원을 하는 경우와, 충원 계획이 없었으나 동 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추가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려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래 기업이 부담하려고 했던 비용(인건비)의 80~90%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에 따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1년 또는 2년)에 한해서라도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후자의 경우, 기업은 계획에 없던 채용이지만 인건비의 10~20%(월 24~48만원)만 부담하면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 증대가 가능할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이윤 증대 효과가 청년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을 넘어서기만 하다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인센티브는 충분하다. 물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고용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유형 사업의 경우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계속 고용 확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계속 고용 확약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세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형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예를 들어 A 기업의 일자리에 지원하는 청년 지원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만약 A 기업이 청년 채용 계획이 있었고 동 사업에 참여하였다면 동 사업에서 설정된 약 2,400만원이라는 임금이 타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청년에게는 사업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주거비에 대한 자율지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A 기업에서 청년고용 계획이 없었지만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사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채용된 청년은 사업참여 기간(1년 또는 2년)동안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일자리에 추가로 고용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고용 여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 고용 효과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동 사업 참여는 거의 절대적으로 기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고, 청년의 입장에서는 '추가 고용'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00~200만원 내외 또는 비금전적인 지역 정착지원(교통비, 주거비, 지역 네트워킹 지원)과 관련한 자율지원 예산만큼의 효과, 그리고 추가 고용 일자리의 경우에는 지역정착을 위한 자율지원과 함께 한시적(1년 또는 2년)인 고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이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주거지 마련 및 교통비)을 차감해야 하므로 청년이 체감하는 효과는 훨씬 줄어든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이라면 이러한 재정 투입의 한시적인 효과(1~2년의 청년 추가 고용)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청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재정 투입은 계속되지만 기업의 비용 절감(이윤 증가)의 효과만 크고[42], 청년에게는 단기적 효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역 이동 비용(주거, 교통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사업 효과가 감소하므로, 이 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적절한 보전 없이는 청년을 지역으로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전체적인 주민등록 이전비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한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 내에 거주 중인 청년이 지역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보인다[43].

[시도별 주민등록 이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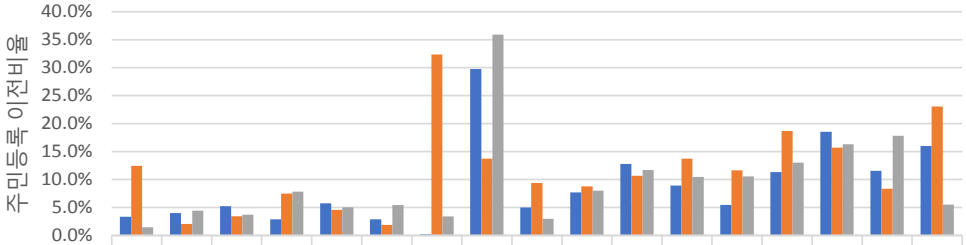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9	3.4%	4.0%	5.3%	2.9%	5.8%	2.9%	0.3%	29.8	5.0%	7.7%	12.8	8.9%	5.5%	11.3	18.5	11.5	16.0
2020	12.5	2.1%	3.5%	7.5%	4.6%	1.9%	32.4	13.7	9.4%	8.8%	10.7	13.7	11.7	18.7	15.7	8.4%	23.1
2021	1.5%	4.4%	3.7%	7.8%	5.0%	5.4%	3.4%	35.9	3.0%	8.0%	11.7	10.5	10.6	13.0	16.3	17.8	5.5%

자료: 행정안전부

42) 만약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지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기업의 비용 절감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사업 유지가 어려웠던 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43) 그러나 지역에 따라 주민등록 이전 비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중인 청년 구직인구가 많으며 실업률도 높기 때문에 타 지역 청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등록 이전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도지역은 주민등록 이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나 일자리, 지역의 거주 여건 등이 특별히 매력적으로 작용하였거나, 해당 지역의 내 거주 중인 청년 구직 인구가 부족하였을 경우로 판단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도 지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청년의 지원율이 떨어져 청년 구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시도별 15~29세 실업률(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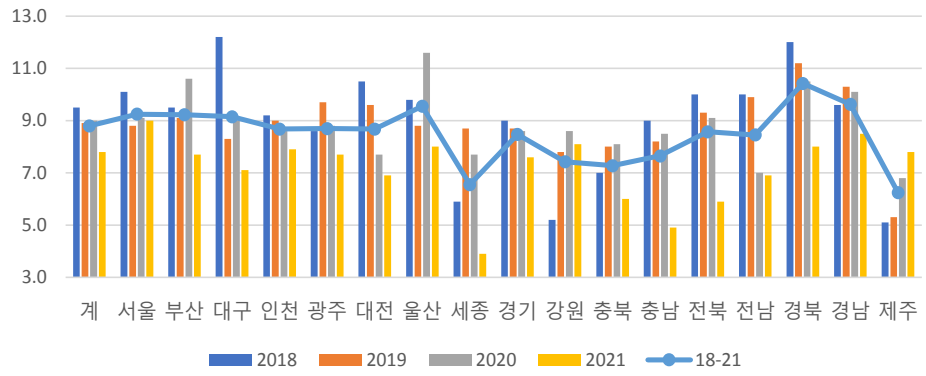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체계로는 그 한계가 크다. 왜냐하면 지방소멸 위기지역과 같은 경우,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 높은 수준의 임금, 지역 인프라 등을 능가하는 수준의 편익이 해당 지역 일자리에서의 임금과 지역 정주를 통해 발현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 2,40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수준과 연간 100~200만원의 자율지원금은 청년에게는 수도권의 양질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할 유인으로서는 부족한 조건이며,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에서 동 사업은 1인당 지원액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등 일자리의 정성적인 질 및 환경에 있어서도 지역에 정착할 이점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동 사업이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어 청년이 정주할만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일자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청년 고용 비용(임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하였을 때, 기업이 안정적으로 청년을 지속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 사업 참여 기업 중에는 중소·영세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다수인 실정[44]이며, 일부 탄탄한 기반을 갖춘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44) 일례로 A 지자체의 경우 2022년 기준 289개의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직원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장이 53%로 절반 이상이며, 10인 이하인 사업장이 84%로서 소규모 업장이 대부분이었다.

의 효과가 발휘되기에 그 제약이 크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어려워 동 사업을 통해 청년 임금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은 1~2년의 재정지원 이후에도 청년을 계속 고용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해당 기업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기업의 수명을 일시적으로나마 연장하는 것이 과연 동 사업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재정지원이 얼마나 지속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냉철한 재고가 필요하다.

즉, 지역소멸완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중소기업에 청년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청년을 유입시키고 지역정착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동 사업의 목적은 현 사업체계로는 달성되기 어려우며,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동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청년 지역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 지역 내 산업, 경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의 발전 방향을 큰 틀에서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총괄적인 지역 일자리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서 동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과거의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고용정책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다양한 지역고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관련 제도 및 정책으로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 사업에서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고용동향, 산업구조 등 지역의 특성 및 일자리 현안을 고려하여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를 해결 및 대응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지역고용정책의 큰 틀에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45] 및 사업 체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및 지역인적자원위원회, 고용노동지청 및 유관기관의 전문성 및 인력풀을 활용,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지역의 고용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5) 일반적인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행정안전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책 대상자들이 타 고용서비스(일자리 연계 등 참여자 후속지원 등)의 수혜 대상에서 누락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사업과 연계 시 타 고용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지역고용정책]

구 분		내 용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 공시제 참여 자치단체: 243개('12.7~)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회계	- 일반회계 (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
	내용	- (공시주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년)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 (공시방법)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 (평가 및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목적	-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취·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사업 지원 - 고용 안전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80~60%)
	내용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 지역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응하여 조선업 희망센터(울산, 거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군산) 운영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목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에서 고용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근거: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회계	- 고용보험기금
	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월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라. 일자리 사업유형 재분류 필요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인턴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채용 촉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유형에 부합하므로, 유형을 재분류하고 기업부담분을 확대하도록 사업 내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일자리 사업유형은 크게 '일자리 지원사업'과 '고용서비스 및 창업 지원사업[46]'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자리 지원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유형과 '고용장려금' 사업유형으로 나뉜다. '직접일자리 사업[47]'은 장기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 경과적 · 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의 사업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직접일자리(인턴형)'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동 사업(특히 1유형인 지역혁신형)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고용창출(채용)장려금'에 부합한다.

즉, 동 사업은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보다는, 청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 채용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동 사업에서는 보조금을 청년의 근무 사실을 증빙하는 최소한의 자료를 토대로 기업에 지급하고, 기업이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특히 동 사업에서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일자리에서는 오히려 청년층의 구인 수요가 크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일경험' 지원보다는 기업 및 지역의 필요에 의한 청년 '고용창출장려'의 목적이 강하므로 기업에 인건비를 보

---

46) 여기에는 직업훈련 사업, 고용서비스 사업, 창업지원 사업,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47)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 유형 일자리 정의에 따르면 ① 사업의 주된 참여대상이 취업취약계층으로(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등 명시), ② 참여기간이 통상 1년 미만(최장 2년)이며, ③ 해당업무가 재량사업이어서 향후 상시적으로 지속될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일자리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조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직접일자리 사업 vs. 고용장려금 사업의 정의]

구 분		내 용
직접 일자리	정의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유형	- (공공업무지원형) 정부·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요건에 특별한 자격요건(학위·자격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보조형)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인턴형)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사회봉사·복지형)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활동 실비를 지원
고용 장려금	정의	-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	**- (고용창출(채용)장려금)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 (고용유지장려금)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안정 - (모성보호장려금) 출산·육아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

자료: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2020)」

또한, 앞서 동 사업은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을 고려할 때 지역소멸완화 대응 정책보다는 청년의 지역 일자리 정책으로서 다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듯, 일자리 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취업취약계층의 비율을 중시) 유형보다는 고용장려금 사업(고용유지율을 중시) 유형, 즉 청년의 고용을 장려하여 청년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용과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비교해 보면 사업의 목적과 청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은 '고용장려금' 유형으로 구분함에 따라, 재정지원 및 기업부담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 1명당 인건비로 연 최대 900만원을 국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인건비 2,400만원 중 국비 및 지방비 80~90%, 기업이 20~10%를 부담한다. 인건비 수준을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두 사업에서의 기업부담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 비교]

구 분	사 업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 신규1유형)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
부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유형	직접일자리(인턴형)	고용장려금
사업 목적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지원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인건비 2,400만원을 2년간 지원(국비+지방비80~90%, 기업부담 20~10%)	-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1년간 국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2022)」, 행정안전부(2022) 사업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재작성

여기서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48].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중략)

제14조(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 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1호(2022.2.23.시행)

48) 고용노동부고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최근 고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21호(2022. 2. 23. 시행)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수준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업의 부담분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 유형으로 추진 중인 여러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인건비로서 연간 약 360만원~9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장려금' 유형으로 분류된 고용촉진 관련 사업 예시(고용노동부)]

구 분		내 용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	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내용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 요건 만족하는 경우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유지한 경우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목적	-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내용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인건비 월 40~100만원 - (국내복귀 기업지원) 인건비 1인당 연간 720만원까지, 총 2년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인건비 1인당 연간 총 960만원까지 - (고용촉진장려금지원) 인건비 1인당 연간 720만원까지
고용촉진 장려금	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 고용 촉진
	내용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년간 매 6개월마다 180~360만원씩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2022)」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고용장려금 유형으로 재분류함과 동시에, 타 고용장려금 사업의 재정지원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업부담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유형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기업부담 및 재정지원의 적정한 수준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재설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체계의 효율성

가. 지자체와 위탁수행기관의 유기적 업무 협력과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운영 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업관리·운영 주체가 상이하고 주체에 따라 사업 운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과의 상시적·유기적 업무 협력관계와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시도별,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위탁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업운영 주체가 상이한 특징이 있다. 시도 본청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위탁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시군구로 갈수록,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탁운영 여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침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본청사업을 예시로 살펴본 위탁기관에는 지역의 상공회의소, 진흥원, 일자리센터, 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법인,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관광공사, 대학 등 매우 다양한 수행기관이 있다.

[자치단체 본청사업 기준 담당부서 및 수행기관(예시)]

구분	유형	사업명	담당부서	수행기관
서울 본청	1유형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회적경제담당관	자치구 직접수행
		마장축산물 부처스 육성사업	재생정책과	시 직접수행
인천 본청	1유형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정책과	(재)인천테크노파크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정책과	(재)인천테크노파크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연계지원 사업	사회적경제과	구군 직접수행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산업진흥과	상공회의소
	3유형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마이스산업과	인천관광공사
	4유형	스마트혁신 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정책과	(재)인천테크노파크
		지식재산(IP) 기반 디지털혁신 청년일자리	산업진흥과	상공회의소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	마이스산업과	인천관광공사
광주 본청	1유형	청년창업 · 청년취업 win-win프로젝트	청년정책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지원사업	청년정책관	광주테크노파크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일자리정책관	5개 자치구 직접수행

구분	유형	사업명	담당부서	수행기관
		청년문화 일자리지원사업	문화도시정책관	광주문화재단
		청년 비엔날레인력 양성사업	문화도시정책관	광주비엔날레
	4유형	디지털디자인· ICT 연계 상생일자리 지원	청년정책관	광주디자인진흥원
		언택트산업 기술인력 인건비지원	청년정책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지역 비대면전략 청년채용지원	청년정책관	광주테크노파크
		청년·디지털문화일자리지원	문화도시정책관	광주문화재단
충북 본청	1유형	충북전략신업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충북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청년정책담당관	충북산학융합본부
		충북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 화장품 뷰티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투자유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공동체협력과	청주상공회의소 및 11개 시군
		청년기능인력 취업지원 사업	일자리정책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유형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충북경영자총협회
		청년 유튜브 마케팅전문가 양성	청년정책담당관	충북경제포럼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북 본청	1유형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정책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
		청년전북 NEW WAVE 지원사업	일자리취업지원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
	4유형	전북 청년 디지털 Switch-on 지원사업	창업지원팀 청년정책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역인재 YOU(Young of U-turn)	창업지원팀 청년정책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정책팀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
경기 오산시	1유형	오산 사회적경제 캥거루사업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4유형	오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경기 화성시	1유형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화성형 우수기업 & 청년 매칭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4유형	디지털뉴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경기 용인시	1유형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용인 청년 일자리프로젝트 사업 Ⅰ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용인 청년 일자리프로젝트 사업 Ⅱ	일자리정책과	용인 상공회의소
		용인 중소기업 청년인턴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4유형	용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과	시 직접수행

자료: 행정안전부, 지자체 취합 자료

각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리고 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때, 이러한 운영 주체의 특성에 따라 사업 추진 각 단계(사업 모집 단계, 운영 단계, 집행)에서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 모집 단계에서 볼 때 자치단체 추진의 경우, 통합홍보 등을 통한 사업홍보에 효과적이며, 사업체 선정 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반면, 행정 절차상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위탁기관에서 세부사업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업 홍보 및 모집 과정이 유연하여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특정 산업분야와 유관한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축적된 정보가 존재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이 용이하고 일부 부실 사업체는 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소요되고, 위탁기관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상세 추진 과정에 대한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간의 기업 및 참여자 연계의 어려움이 있다.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사업 운영과정을 표준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 사업 담당자의 순환 보직에 따라 전문성 및 연속성의 확보가 어렵고, 지자체에 따라 청년 담당부서 또는 일자리 담당부서 담당자가 기존 업무에 추가적으로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관리의 한계가 크다. 또한 수행기관 없이 지자체 담당자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이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과다한 면이 존재한다. 반면, 위탁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기업과의 연계 및 협력이 유리하고 참여 청년과 보다 밀접한 소통을 통해 중도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며, 다수의 인력으로 사업장 수시 점검이 가능한 면이 있다. 그러나 사업 참여자의 중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탁 수수료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발생되며, 위탁기관에 따라서도 전문성 및 수행능력에 차이가 있어 지자체 간 사업 운영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집행의 관점에서는 자치단체 추진의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으나, 집행 시 증빙서류 검토 및 회계 업무량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탁기관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집행과 민원 대응에서 책임성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관리 소홀 시에는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사업 수행 주체에 따른 장단점]

구분		자치단체 추진	위탁기관에 위탁 추진
사업 모집	장점	- 통합홍보 시 사업홍보에 효과적 - 지자체 관리 기업 풀을 이용하여 대상별 집중 홍보를 통해 기업의 사업 참여 제고 가능 - 사업체 선정시 공정한 평가 가능	- 홍보 및 모집 과정이 유연 - 사업 추진 속도가 빠름 - 위탁기관의 경우 특정 산업분야 유관기관인 경우가 많아 신규사업 발굴 용이, 부실 사업체 제외가능 - 전문 분야 청년 모집이 수월, 네트워킹 통한 인력풀 구성가능
	단점	- 행정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 (홍보비 집행 지연 등)	-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 소요 - 자치단체에서 상세 추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사업 간 연계 지원 어려움) - 청탁 등 공정성 저해 가능성
사업 운영	장점	- 지자체 내에서 사업 운영과정의 표준화 가능 - 참여 청년의 의견 직접 청취 가능	- 기업 연계 및 협력에 유리 - 청년과 밀접 소통으로 중도퇴사 방지 및 장기근속 제고 가능 - 복수의 수행인원으로 월별 및 분기별, 의심 사업장 수시 점검이 가능
	단점	- 담당자 순환 보직에 따른 운영 전문성, 연속성 확보가 어려움 -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 명확 - 행정절차상 사업 추진시 유연성 부족	- 중복 참여자에 대한 확인 어려움 - 위탁 수수료 및 수행인력 인건비 발생 - 위탁기관 역량에 따라 수행능력 및 운영성과 차이 발생
집행	장점	- 체계적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가능	- 사업비 조기 집행 가능
	단점	- 증빙서류 수합 및 검토, 지출 등 회계 업무량 증가	- 집행 및 민원대응 시 책임성 약화 - 관리 소홀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사업 수행 주체에 따라 사업 각 단계에서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행 주체별 사업 수행 절차 및 사업관리의 질적 격차가 커질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중앙-지방-위탁기관의 유기적 업무 협력을 통해 각 사업 주체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사업의 계획, 운영, 집행 단계에서 공정성, 효율성, 유연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각 위탁기관에서 참여 청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은 각 기초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의 담당자만 파악하고 있을 뿐, 시도 단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동 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여 수행하는 상향식 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이 일률적일 필요는 없으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는 효율적 사업운영 및 사업 성과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운영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위탁의 효율성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 하는 것에 비해 위탁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기관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의 차이가 클 경우, 어떠한 위탁기관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과 사업 관리·감독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사업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위탁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인 '전담 매니저'에 대한 청년의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사업 참여 청년의 위탁기관 전담 매니저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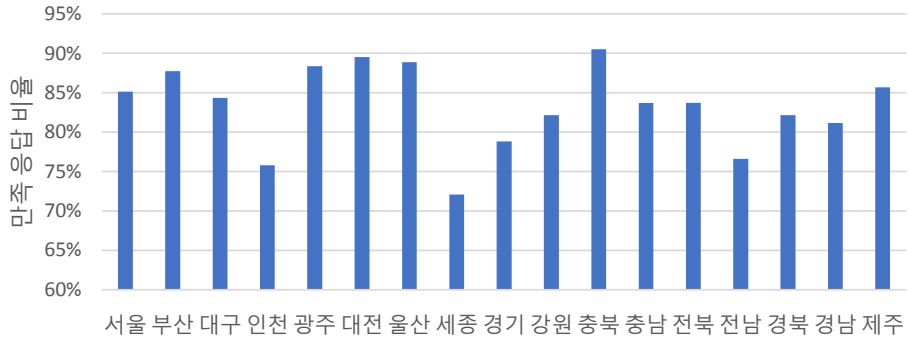

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의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으로, 위의 비율은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임. 총 응답인원 수는 2,216명임

자료: 행정안전부

위탁기관의 근무환경 및 전문성이 지자체가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는 각 지자체 및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평가는 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사업 모집 및 운영, 사업장 감독, 청년의견 수렴, 집행까지 이르는 과정)의 질 전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위탁수행 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지자체별 사업 성과의 차이가 혹 위탁기관의 수행능력에 기인한 차이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에 의한 사업 운영에서 청탁 등에 의해 공정성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점검 프로세스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각 선정 위탁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 운영에 있어 표준화된 운영사항 교육 및 안내 등을 통해 위탁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중인 지자체의 수가 많고 세부사업의 수 및 각 세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 또한 매우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업의 정보 전달, 취합 및 공유, 사업의 정산 등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전국의 수많은 위탁기관과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간의 유기적 협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총괄적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사업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마련하는 데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사업 참여자 및 기업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 및 관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업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업 간 연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 공모 및 접수는 세부사업 주관 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시·군·구 사업을 시도에서 총괄하여 공모 및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업 시행지침에서는 '모집 공고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역 청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참여 청년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기업에서 직접 청년을 모집·채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워크넷[49] 등에 모집 공고를 하고 있다.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시에는 위탁기관에서 진행 시 위탁기관 홈페이지 공고 및 유관기관(시·군·구 및 타 일자리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경우 홈페이지 및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에 공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에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연결 링크를 통해 기업 및 청년 모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일원화된 창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 모집 공고 방법]

구분	공고 주체	공고 방법
기업 모집	위탁기관	위탁기관 홈페이지, 시군협조 공문, 유관기관협조 공문 등
	지방자치단체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통합공고, 일자리지원센터, 기업인협의회 등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연결
청년 모집	참여기업 (자체모집시)	구인·구직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워크넷 등
	지방자치단체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등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연결

자료: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기관 취합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49) 워크넷(WorkNet, www.work.go.kr)은 1998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로서, 2011년부터는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다양한 사업 참여 모집 공고 방법(예시)]

지역	구분	모집 공고 방법
서울	청년	자치단체 홈페이지, 소식지, 신문, 관내 대학, 직업전문학원, 서울청년포털, 서울일자리포털 등
	사업장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청년 페이스북, 구청 소식지, 지역내 주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취업지원센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넷
대구	청년	선정된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행기관 홈페이지 및 잡코리아, 워크넷, 사람인 등 구인사이트를 통해 공개모집
	사업장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산업단지 현장 등
광주	청년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워크넷, 민간인력 모집공고, 지인 소개 등
	사업장	자치단체의 통합공고, 수행기관, 지역 유관기관 홈페이지, 네트워크 기업들의 메일링 등
세종	청년	공공, 민간 채용사이트 등
	사업장	'청사진'(사회적 기업) 메일링 리스트, 세종넷, 복지넷, 시청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자료와 '교차로'
강원	청년	자치단체 홈페이지, 워크넷, SNS 등
	사업장	자치단체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SNS, 전광판 등
전북	청년	자치단체 홈페이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대학, 유관기관, 취업알선사이트, 신문, 버스광고 등
전남	청년	자치단체 홈페이지, 전남 일자리 통합정보망, 업체 홈페이지, 사람인, 대학 취업지원센터, 지역신문사 지면, 지역방송 등
	사업장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장 모집
경북	청년	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직업학교, 학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잡코리아, 워크넷, 사람인 등

자료: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모집 공고페이지 안내]

사업소개	지자체별 모집공고	참여자 의견수렴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설명>

지자체	지자체 홈페이지	통합공고 플랫폼> 공고페이지
서울	www.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채용시험
부산	www.busan.go.kr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대구	www.daegu.go.kr	대구시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고시공고
인천	www.incheon.go.kr	인천시 홈페이지 > 일자리포털 > 참여소통 > 공지사항
광주	www.gwangju.go.kr	광주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대전	www.daejeon.go.kr	대전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청자료 > 공보(고시공고)
울산	www.ulsan.go.kr	울산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세종	www.sejong.go.kr	세종시 홈페이지 > 공고/고시 > 일반공고/고시
경기	www.gg.go.kr	경기도 홈페이지 > 뉴스 > 고시·입법예고 > 고시·공고
강원	www.provin.gangwon.kr	강원도 홈페이지 > 도정마당 > 공고/고시
충북	www.chungbuk.go.kr	충북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충남	www.chungnam.go.kr	충남도 홈페이지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전북	www.jeonbuk.go.kr	전북도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도정소식 > 공고/고시
전남	www.jeonnam.go.kr	전남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고시공고
경북	www.gb.go.kr	경북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알림마당
경남	www.gyeongnam.go.kr	경남도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 새소식
제주	www.jeju.go.kr	제주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 해당 공고페이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검색해주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50],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83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공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 창업투자생태계형은 창업지원사업에 해당하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2020년 1개 사업, 2022년 1개 사업만이 통합공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뿐(2022.4.29. 검색기준) 그 외 대부분의 사업들은 통합공고가 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창업지원 유형에 대해 통합공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6~2021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

구분	지원기관	사업규모
2016	6개(중앙부처)	65개 사업, 0.6조원(중앙부처)
2017	7개(중앙부처)	62개 사업, 0.6조원(중앙부처)
2018	7개(중앙부처)	60개 사업, 0.8조원(중앙부처)
2019	14개(중앙부처)	69개 사업, 1.1조원(중앙부처)
2020	16개(중앙부처)	90개 사업, 1.5조원(중앙부처)
2021	15개(중앙부처) 17개(광역지자체)	89개 사업, 1.4조원(중앙부처) 104개 사업, 0.8조원(광역지자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2.1.4.)

[중앙부처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2021~2022)]

(단위: 개, 억원, %)

구분	2021				2022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중기부	40	44.9	11,790	85.4	45	45.0	33,131	93.1
문체부	11	12.4	491.6	3.6	14	14.0	626.8	1.8
과기부	10	11.2	457.7	3.3	9	9.0	533.7	1.5
고용부	1	1.1	298.5	2.2	1	1.0	318.8	0.9
농림부	8	9.0	161.9	1.2	8	8.0	202.1	0.6
산림청	-	-	-	-	2	2.0	182.0	0.5
환경부	3	3.4	120.0	0.9	3	3.0	159.8	0.4
특허청	4	4.5	153.2	1.1	4	4.0	153.2	0.4
해수부	2	2.2	70.6	0.5	4	4.0	120.9	0.3
교육부	2	2.2	58.1	0.4	2	2.0	58.9	0.2
복지부	2	2.2	78.0	0.6	3	3.0	45.7	0.1
농진청	1	1.1	122.0	0.9	1	1.0	36.0	0.1
법무부	1	1.1	8.4	0.1	1	1.0	8.4	0.0
국토부	3	3.4	0.7	0.0	3	3.0	0.8	0.0
기상청	1	1.1	1.6	0.0	-	-	-	-
합계	89	100.0	13,812	100.0	100	100.0	35,578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2.1.4.)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고 참여 가능한 사업을 비교·지원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사업 홍보 채널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각 지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보를 알지 못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 기업의 모집 공고 시에는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창구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례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던 이력이 있는(비교적 정보 접근성이 좋은) 특정 기업이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칫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만 의존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기업 중 57.4%가 본 사업과 유사한 정부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42.6%는 본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여, 앞선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원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지역 일자리 발굴·제공이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도 배치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참여기업의 과거 유사 정부사업 참여 경험(2021)]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합계	310	100.0	170	100.0	25	100.0	10	100.0	105	100.0
있음	178	57.4	90	52.9	15	60.0	3	30.0	70	66.7
없음	132	42.6	80	47.1	10	40.0	7	70.0	35	33.3

주: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여 사업체(301개소)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는 지역 내 중소규모이지만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사업참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유망한 산업 및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청년의 경우에도 정보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실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인지하게 되는 경로는 49.2%가 지인을 통해서, 43%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였다. 사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진로, 구직 등에 있어서 인터넷 매체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패널(2020)의 미취업자 구직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살펴보면 인터넷 등 통신망이 66.9%로 가장 높았고, 친구·친지 이용은 5.2%, 공공직업안내소는 4.7%, 신문, TV 등 광고를 통해서가 4.1%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비교하여, 사업의 인지 경로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지인을 통해서라면, 그만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일반적인 인터넷 매체의 활용으로는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의 사업인지 경로(2021)]

(단위: 명, %)

사업인지 경로	응답 수	비율
총 응답자 수	2,766	100.0
지인(가족, 친구 등)	1,360	49.2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	1,190	43.0
SNS	92	3.3
신문 및 언론매체	83	3.0
포스터, 현수막	81	2.9
문자 메시지	57	2.1
TV광고	13	0.5
기타	367	13.3

주: 중복 응답을 포함한 응답 수로서 합계는 총 응답자 수와 일치하지 않음. 비율은 해당 문항 응답자 수를 총 응답자 수(2,766명)으로 나눈 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미취업자의 구직방법(한국노동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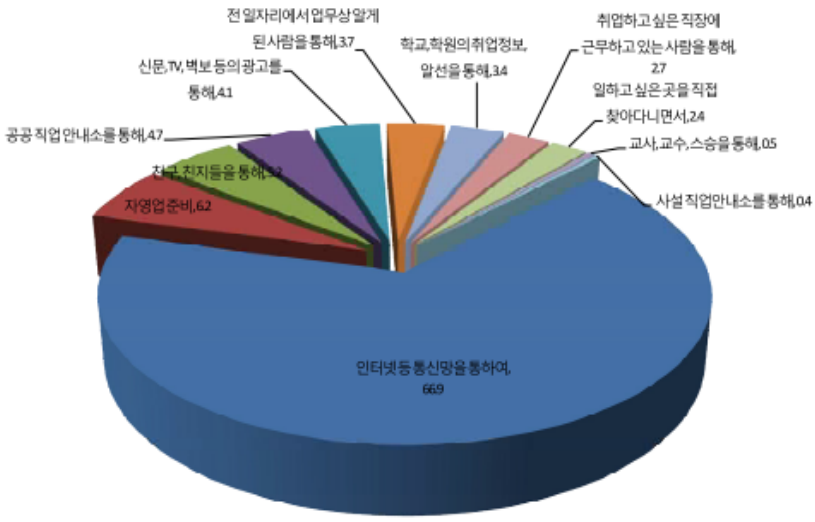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행지침에서 청년 모집 시에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통합공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기타 홍보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통합공고문에는 기업 정보 및 구인 정보 등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참여 기업 및 참여자를 함께 모집 공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유형과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며, 참여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의 산업 분야와 직무에 대한 홍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청년 지원자들이 직무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채용이 되고, 재직 중 업무 숙달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였다. 통합공고문에서는 각 사업별 수행기관(문의처)를 안내하고 있으나, 청년이 다수의 사업 참여를 고려할 경우, 지원자가 참여 수행기관에 각각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수행기관별로 사업 개별 홍보 시에는 해당 지자체 내라 할지라도 기업의 정보가 구인·구직 사이트 및 해당 시군구의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분절적으로 흩어져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사업간 연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모집 및 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참여 기업 및 참여 청년이 용이하게 정보를 획득·비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민간 일자리와도 비교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구인·구직·직업·진로에 대한 정보가 집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 등 웹사이트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원화된 창구는 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의 정보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업 운영 주체가 사업체 및 지원자의 풀(pool)을 용이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참여 기업에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한) 기 지원 청년 중 사업 적합도를 고려하여 곧바로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서 재공고 및 채용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 집행 지연과 불용예산의 문제 및 퇴사자로 인한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가. 청년의 지역 정주 효과에 대한 관리 필요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요한 목표인 '청년의 지역정착'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 참여 이후의 지역 정주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 선발 지역요건으로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시·도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사업의 경우는 시·군·구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며, 타지역 거주자가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청년의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지역 거주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동 사업 참여자들의 주민등록 이전현황을 살펴보면, 응답한 참여자 중 8.7%에 해당하는 비율이 사업 참여를 위해 타지역에서 사업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2018년 6.5%에서 2019년 8.0%, 2020년 10.1%로 늘었다가 다시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주민등록 이전비율(2018~2021)]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사업지역 내 청년 참여 비율	93.5	92.0	89.9	91.3
주민등록 이전 청년 비율	6.5	8.0	10.1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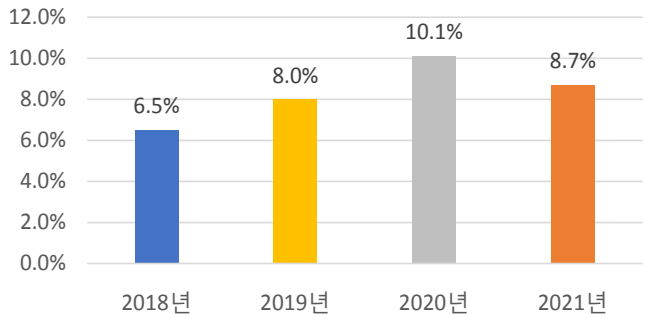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이전 비율은 사업 참여자 중 타지역 청년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타지역 참여자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비율의 높고 낮음 자체가 사업의 직접적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주민등록 이전 비율은 타지역 청년의 인구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비율이 9.4%로 수도권의 3.7%에 비해 높았고, 도지역은 11.3%로 특·광역시의 4.5%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이 지방의 인구 유입에 일부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주민등록 이전현황은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 한하여 보고된 정보로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청년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이 종료된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 종료 이후 청년의 해당지역 정착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지역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주민등록 이전현황(2021년 12월)]

(단위: 명)

구분	합계		주민등록 비이전 인원 (해당지역에서 사업 참여)		주민등록 이전인원 (타지역에서 이전)	
	참여인원	참여비중	비이전인원	비율	이전인원	비율
합계	27,559	100.0%	25,156	91.3%	2,403	8.7%
수도권	3,206	11.6%	3,087	96.3%	119	3.7%
비수도권	24,353	88.4%	22,069	90.6%	2,284	9.4%
특·광역시	10,509	38.1%	10,040	95.5%	469	4.5%
도	17,050	61.9%	15,116	88.7%	1,934	11.3%

주: 주민등록이전 현황을 조사한 참여자 수는 전체 참여자 수와 일치하지는 않음. 위의 내용은 조사된 참여자 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계산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으로는 주민등록 비이전 인원 또한 의미가 있다. 즉, 사업에 참여하였던 전체 청년 중에서 91.3%의 청년은 해당 지역 내 이미 거주하였던 자로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정주하였을 것이고, 만약 동 사업 참여를 종료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지속 정착하였다면 이 또한 지역 정착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 비이전 청년에 대해서도 동 사업 참여 이후의 지역 정주 효과를 분석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청년의 유입 비율보다 유출 비율이 높고,

만약 동 사업의 지역 거주 청년 참여자의 타지역으로의 유출 비율이 해당 지역 전체 청년의 평균적인 유출 비율에 비해 낮다면 지역 정착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연결고리가 잘 작동될 때 가능하며, 여기서 '청년의 지역 정착'은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주요 목표인 청년의 지역 정착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정착 효과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 선정에 앞서, 사업에 참여하였던 청년이 지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지역 정착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참여자 전체를 모수로 할 것인지, 사업 중도 탈락자는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얼마의 기간을 지역 정주로 볼 것인지, 추적(follow-up) 횟수 및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청년의 인센티브 수령 비율을 사업의 주요 성과로 인식하고 지역 정착 효과 분석 및 지속적 성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청년이 2년의 사업 참여기간을 채우고 3개월 내 해당지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 청년에게 연간 1,000만원(분기별 250만원씩 지급)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2년 이상을 지역에 정주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있는 청년 비율(48.3%)은 지역정착 효과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사업 전체 참여자 33,360명 중 사업을 종료한 일부 5,318명(15.9%)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 전체의 지역 정착 효과를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지급되는 연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는 동 사업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 유인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인건비 또한 청년을 위한 지원이기는 하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에 더 가까운 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동 지표는 성과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 정착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인센티브 수령인원(2021)]

(단위: 명)

사업 종료인원수(2021)	인센티브 수령인원	인센티브 수령비율
5,318	2,566	48.3%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 기준으로는 동 사업 체계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 효과를 분석하는데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앙에서 이에 대해 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 정착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지표로서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는 사업 기간 2년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한시사업(2018~2021)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시작한 청년 중 2년 만기에 도래하는 청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년 만기 이후 청년이 정규직 전환 및 창업 등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참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연간 1,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사업참여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만한 직접적 유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참여 2년 종료 이후 1년간 인센티브를 수령한 청년의 비율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수령한 이후에도 과연 청년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주하는지도 주요한 사업성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 수령 이후의 고용유지율 및 정주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현재 동 사업에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유사한 취지로서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정착금[51]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1)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예시)「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업내용)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개발 종사 청년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자격요건)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로 주소지가 전라북도이며, 청년 연령기간 동안 도내 최소 1년 이상 거주. 해당 분야에서 청년연령 기간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나. 사업장 지도·점검사항 구체화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환류 프로세스 마련 필요

첫째,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지도·점검사항의 구체화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및 환류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분기 1회)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별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반기 1회)하고 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의 신고 또는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이외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합동 점검시에는 17개 시·도별로 2개 사업장을 선정, 방문하여 참여청년,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 전담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한다. 현장조사에는 연 1~2회 권역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문단을 구성, 동행하여 증빙자료 확인 및 면접 후 조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합동 점검 시 방문하는 지자체 수 및 사업장 수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21년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17개 시도에 대해 시도별 2개, 즉 34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 시 방문하는 사업장 선별은 사업유형별로 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현장 방문의 필요성, 동선 등을 고려하고, 청년과 사업장의 만족도, 집행률, 참여율 등이 높고 본 사업의 취지에 충실하여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방문 대상에 포함하여 현황 진단 및 원인 파악을 하기도 한다.

[분기별 행정안전부 합동 점검 현황]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장 수
2018	4분기	- 장소 :전국 9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16개 사업장
2019	1분기	- 장소 :전국 15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31개 사업장
	2분기	- 장소 :전국 10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21개 사업장
	4분기	- 장소 :전국 15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32개 사업장
2020	1분기	- 장소 :전국 17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34개 사업장
	2분기	- 장소 :전국 13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지방행정연구원 및 현지 자문단	26개 사업장
	3분기	- 장소 :전국 9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18개 사업장
	4분기	- 장소 :전국 17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지방행정연구원, 현지 자문단	34개 사업장
2021	1분기	- 장소 :전국 17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34개 사업장
	2분기	- 장소 :전국 17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지방행정연구원, 현지 자문단	34개 사업장
	3분기	- 장소 :전국 17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34개 사업장
	4분기	- 장소 :전국 17개 지자체 - 점검자 : 행안부, 시·도 사업 담당자	34개 사업장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수행기관(지자체, 위탁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다. 사업 운영 주체가 되는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및 청년 근로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주로 항목별 점검 사항에 대해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도·점검은 사업의 수시 관리 차원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중앙부처의 차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하도록 하는 체계는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이외에, 각 본청 및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 현장점검 시에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수행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모니터링 사항과 방식도 서로 달라 사업장 지도·점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의 일관성 유지,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통의 점검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대상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증빙자료
		네	아니오	
청년 선발	○ 청년 모집공고 시행 - 공개모집 시행여부, 공고매체, 홍보 방법 등			○ 공개모집 공고문, 홍보자료 등
	○ 접수기간 관련 - 접수기간 준수여부			
	○ 중복 참여 확인 - 타 사업 중복참여, 이중 참여여부 확인			○ 일모아시스템 사용여부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청년 선발 과정 - 선발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서류 및 면접 심사 자료, 선정결과 등 청년 선발 관련 서류 일체
사업장 선발	○ 사업장 모집공고 시행 - 공개모집 시행여부			○ 공개모집 공고문, 사업장 심사자료 등
	○ 사업장 요건 확인 - 사업장 결격사유(임금체불, 이해관계 등) 확인 여부			○ 임금체불 (고용부 홈페이지) 확인여부, 사업장 신청서류 일체
사업추진 현황	○ 사업추진 관련 확인 - 목표인원 채용 완료여부, 예산 집행 실적, 청년 관리 현황 등			○ 청년 채용 및 예산집행 현황 자료, 기본교육 실시결과, 청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결과
현장점검 및 사후조치 여부	○ 근무관련내용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행여부			○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 실제수행업무 확인자료
	○ 보조금 신청 서류 확인			○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일체
	○ 정기적 점검 실시			○ 연초 사업계획내 점검계획 또는 자체 점검 계획 및 결과
	○ 부정사례 발생 시 조치(발생사업 限)			○ 부정수급 발생사업 사후처리 자료 (사업장배제, 청년고용승계고발여부, 현재 까지의 조치사항)
	○ 부정사례 발생 후 사후조치			
건의 사항	○ (지자체) ○ (사업장) ○ (청 년)			

자료: 행정안전부

현재 사업지침에 따르면 현장점검 시 지자체는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법률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의 환수 등[52]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법적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각 개별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개별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를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 및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점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따라 이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증액·감액 등으로 이어지는 환류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진한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차수 사업장 점검 시 재방문하여 개선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 기업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참여대상 모집 방법으로는 크게 참여 기업과 참여 청년을 각각 공개 선발하여 매칭하여 주는 방법과, 참여 기업에서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청년을 매칭 후 신청하면 지자체가 재직자 채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발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 중 기업이 청년을 직접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청년의 선정 과정에서 직계존비속을 제외하도록 하나, 해당 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 참여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채용 계약 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사용자의 친인척 여부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서류상 확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자체에 따라, 사업에 따라 해당 사항 확인 여부 또한 상이하다.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사업의 악용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타 불특정 기업과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명시적으로 갖추고 있을 필요성이 크다.

---

5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현재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이에 대한 조치 과정을 안내하고 있으나,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4년간 30건[53]이며 이 중 친인척 고용과 관련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다.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제도적 관리·확인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 사례가 있었더라도 해당 사항에 대한 적발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수급 조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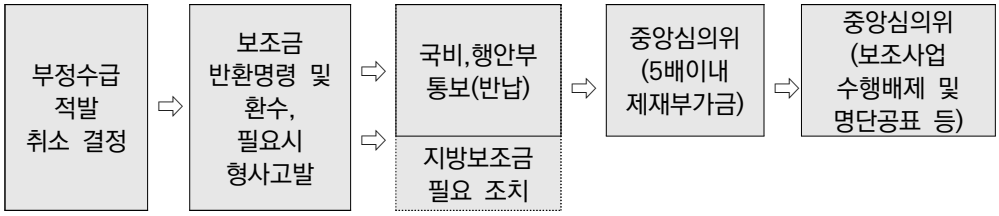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지침(2022)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청년 채용 단계에서의 부정수급의 위험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에 명시하도록 하여 각 지자체 및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서류 확인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례의 적발 시 조치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현재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에서 분기별 2개 사업장에 대해 시행하는 점검으로는 사업장별 중복 없이 점검한다 해도 연 130여개 남짓의 사업장 점검이 가능하며, 위탁기관에서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간 전국의 1만 7천여개의 사업장(2021년 12월 기준)을 점검하는 데는 그 한계가 크다.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비교적 상황이 양호한 편이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점검에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해 그 제약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점검의 실효성 제고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물리적 시간 및 인력의 제약하에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는 대안 및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53) 부정수급 사유는 허위인력(15건), 용도 외 사용(9건), 지급요건 미충족(6건) 등으로 보고되었다.

다. 고용 유지율(중도 탈락률)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업 고용 유지율(중도 탈락률) 개선을 위하여 중도 탈락 원인분석, 사후관리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도 탈락률은 2018년 12.6%, 2019년 19.1%, 2020년 20.0%, 2021년 17.7%로 나타났다. 중도 탈락률은 전체 참여자 중에서 중도포기한 청년의 비율을 말하며, 고용 유지율(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원비율)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이 비율은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 '사람인'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입사 1년차 이하의 1년간 평균 퇴사율인 29.3%(잡코리아), 27.8%(사람인) 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사업유형에 따라서 중도 탈락률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형(4유형)이 20.9%로 가장 높았고, 지역정착지원형(1유형)은 16.9%, 민간취업연계형(3유형)은 16.1%, 그리고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의 경우는 9.3%로 중도 탈락률이 가장 낮았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도 탈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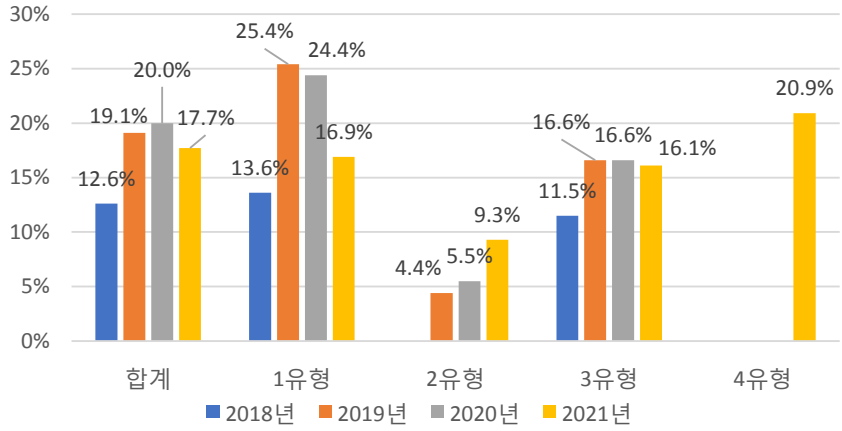

주: 중도 탈락률은 전체 참여자수(고용창출인원) 대비 중도포기인원의 비율을 말함
자료: 행정안전부

중도 탈락률의 연도별 추이 또한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2018년 13.6%에서 2019년 25.4%로 높아졌다가 2020년 24.4%, 2021년 16.9%로 줄어들었고,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반면 창업투자생태계형의 경우 2019년 4.4%에서 2020년 5.5%, 그리고 2021년에는

9.3%로 중도 탈락률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2021년 신규 사업유형으로 비교적 단기일자리로 추진된 포스트코로나대응형의 경우 2021년 중도 탈락률이 20.9%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특·광역시와 도, 그리고 광역사업과 기초사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광역자치단체 본청사업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운영사업의 중도 탈락률이, 그리고 특·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의 중도 탈락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도 탈락률('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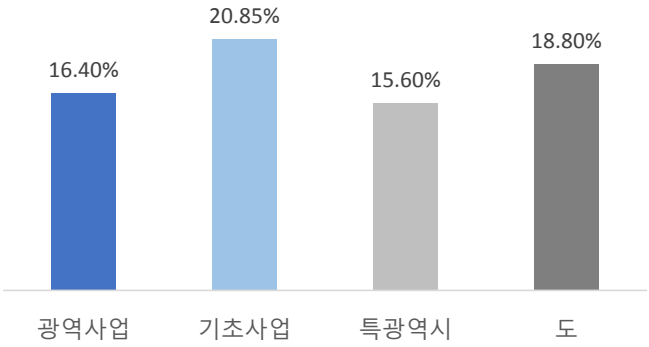

주: 중도 탈락률은 전체 참여자수(고용창출인원) 대비 중도포기인원의 비율을 말함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유형 중 1유형(지역정착지원형)에서는 청년이 사업참여기간 2년을 충족하고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 시 지자체는 해당 청년에게 연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기업부담분 없이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수령비율은 장기 고용 유지율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에 2년간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총 2,566명으로 전체 종료인원 5,318명 중 48.3%에 해당하였다. 시도별로는 인천(87.3%)과 제주(85.2%), 충북(8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구, 광주, 세종 등은 30% 전후로 낮은 편으로,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 수령인원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의 인센티브 수령인원(2021)]

사업 종료인원수(2021)	인센티브 수령인원	인센티브 수령비율
5,318명	2,566명	48.3%

자료: 행정안전부

[시도별 종료인원 대비 인센티브 수령인원의 비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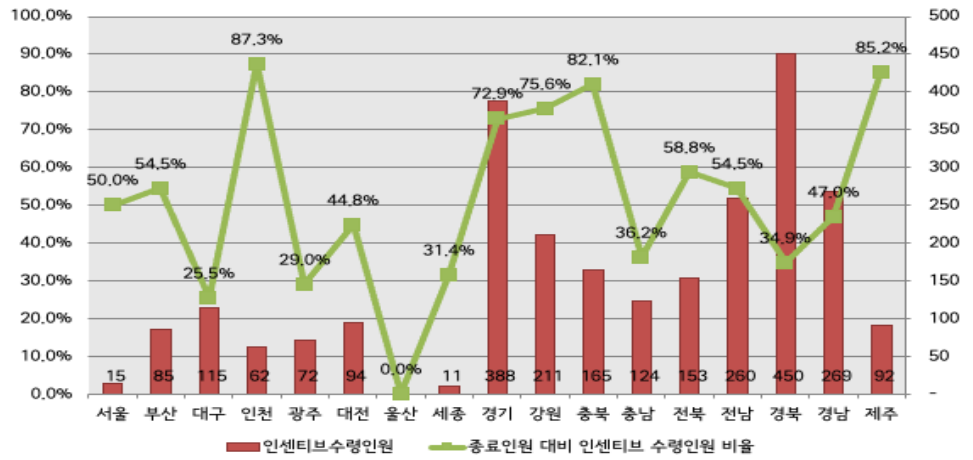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참여자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중도 탈락사유로는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 긍정적 변화(타 기업 취업 등)이 15.5%, 자기개발(학업, 취·창업 준비 등) 7.2%, 기타(개인사정, 건강상의 이유, 이사, 타사업 참여 등) 77.3%이었고, 민간취업연계형은 긍정적 변화가 27.5%, 자기개발이 13.7%, 기타 58.8%로 나타났다. 포스트코로나대응형 사업의 경우 긍정적 변화가 19.5%, 자기개발이 9.2%, 그 외 기타 사유가 71.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중도 탈락 사유의 일부 비중만이 긍정적 변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퇴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도 탈락 사유]

(단위: %)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포스트코로나대응형		
	긍정적 변화	자기 개발	기타	긍정적 변화	기타	긍정적 변화	자기 개발	기타	긍정적 변화	자기 개발	기타
2019	21.1	7.1	71.8	11.7	88.3	28.2	10.9	60.9	-	-	-
2020	12.4	7.5	80.1	15.8	84.2	31.0	17.3	51.7	-	-	-
2021	15.5	7.2	77.3	16.2	85.8	27.5	13.7	58.8	19.5	9.2	71.3

자료: 행정안전부

본 설문조사에서는 '기타' 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를 참고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여건 불만족(46.2%)이 가장 높았고,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4.5%), 계약기간 사유(13.2%), 전망이 없어서(8.8%), 전공, 적성이 맞지 않아서(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청년층의 일자리 탈락 사유로서 동 사업 참여자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설문의 지역, 종사하였던 산업, 일자리 유형 등의 분포가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응답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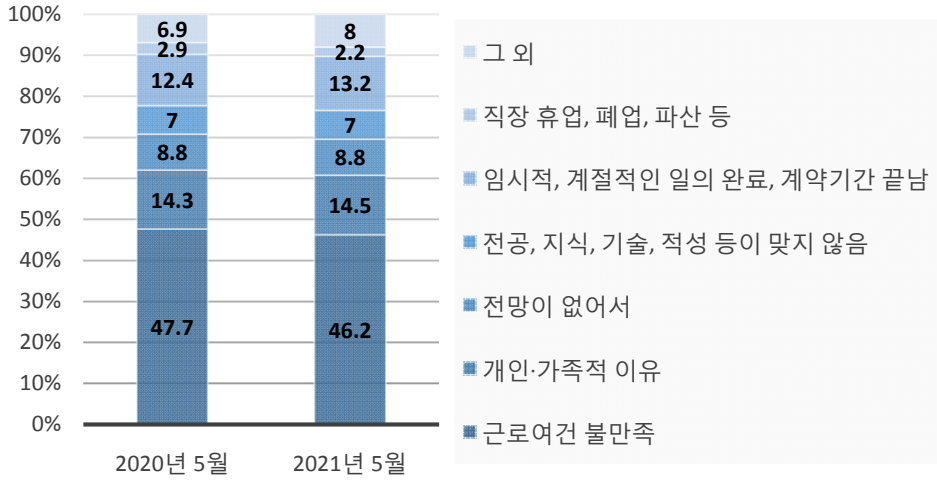

주: '그 외' 에는 창업, 가족사업 참여,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 어려움, 권고사직, 기타 등이 존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20~2021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의 기본유형을 설계하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상향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중도 탈락의 사유가 타 일자리의 취업이나 창업이 아닌 이상, 사업체의 근무여건 및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일자리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지역에서 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해 그 규모나 근무환경에 있어 지역 및 기업 간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청년이 실제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대하는 근무조건(환경)과는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었던 일부 사업의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단순 보조 업무 등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고, 이는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이후 사업지침의 사업체 선정기준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참여 청년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사업참여 종료 후 타 일자리로의 이직 시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자체 사업 및 사업장 선정 시 청년에게 제공하려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

청년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 원인 파악 및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사업장과 참여 청년의 사례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중도 탈락 이후의 관리체계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중도 탈락한 사유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유형, 지역에 따라 중도 탈락률의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사업유형별로 중도 탈락 원인분석과 더불어 사업 내용에 대한 고민, 그 밖에 청년들이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도탈락률은 사업의 효과와도 직결되며 지자체 및 개별사업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54]. 따라서 과거 사업의 중도탈락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추후 동 사업의 목표 달성 및 효과성 있는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도별 중도탈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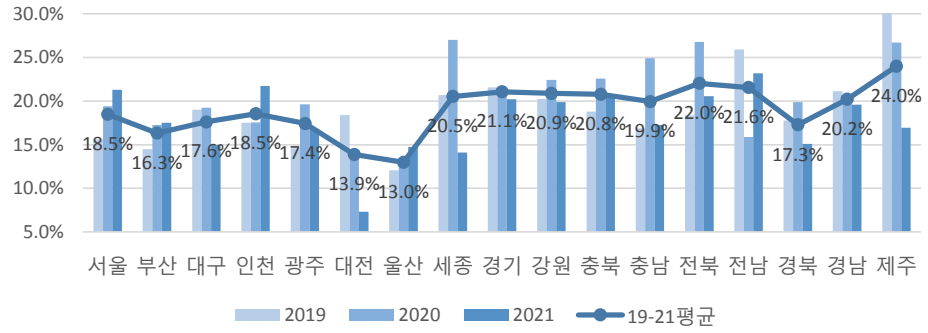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청년이 중도탈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부당한 처우,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퇴사한 사례인지 사실 여부를 파악 후 운영지침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분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점검 시 부정수급 등 법적 점검 사항 이외에도,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의 관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

54)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의 중도탈락률이 연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예를 들면 청년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일수도 있지만 사업설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혹은, 동 지자체 내에서도 사업유형에 따라 중도탈락률의 차이가 클 경우, 특정 사업유형 설계가 부적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점검 시 간담회 형식으로 청년 및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형식 및 횟수, 수렴 절차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형식적인 경우도 존재함에 따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일자리의 질을 관리하고 청년층의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사업장 및 청년의 의견수렴 지침을 구체화하고, 지침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시 간담회 이외에도 전담 매니저와 참여 청년들이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밴드 및 카카오톡)을 마련하여 청년의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중도 탈락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소통과 피드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정부는 ’90년대 이후 장기화된 청년 고용부진, 그리고 에코붐 세대(1991년생~1996년생)가 20대 후반이 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른 인구구조적 요인 변화로 인해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수준의 청년 고용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의 청년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현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한계가 존재하였음을 고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상향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2018년에서 2021년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2022년부터는 신규 유형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4년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였으며 사업의 큰 틀에서 사업 설계와 합목적성, 효율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계속사업 승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설계 및 합목적성 검토 필요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실적 및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 사업은 사업성과로서 ‘일자리 창출 수’라는 단일지표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인 고용유지율이나 창업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알기 어렵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청년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의 효과성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 사업성과 측정지표를 재검토하고,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는 이 사업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사업목표이므로, 이를 지표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에서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자율지원'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모든 유형에서는 인건비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자율지원 사항을 필수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심사 시 반드시 충분한 수준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임금 이외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항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주여건 지원으로, 동 사업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지원 사항에 대해 일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자율지원 사항에 대해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자율지원 사항은 동 사업에서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고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내용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여 자율지원 요소를 적극 파악 및 지원하고, 자율지원의 목적에 맞게 지원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지원 내용 및 집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항 중 청년의 임금은 전 지자체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자율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지자체별 지원사항에 차이가 크며, 이는 청년이 참여할 사업을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므로 사업 참여자 공고 시 각 사업의 자율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여 청년들로 하여금 사업별 비교·선택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계속 추진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당초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청년 실업률 우려에 따라 2017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이용하여 '18~'21년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 사업이나, '에코붐 세대인 청년 인구의 일시적 증가' 추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한시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동 사업을 2022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청년일자리의 지속적 수요 및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는 2022년 이후에는 기존 참여자의 연차지원액만 예산에 반영하는 높은 수준의 '감축'을 하도록 평가하였고, 재추진할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기한 이후 환경 변화와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유형으로 추진하고 이에 앞서 전략적 중장기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중장기계획 수립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 유형은 기존의 사업유형과 대동소이하여 기존사업의 연장선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략적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서 청년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 재정투입을 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클 뿐, 청년 입장에서는 기업의 추가 고용일 때에 한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한시적 고용 효과를, 그리고 추가 고용이 아닌 경우는 지역 정착을 위한 자율지원(교통비 및 주거비 등)에 대한 효과만 존재하여, 청년에게는 단기적 효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임금수준 및 사업체계로는 청년으로 하여금 수도권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동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하여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청년을 지속 고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지역 일자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 사업 참여 기업 중에는 중소·영세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다수인 실정이고,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1~2년간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동 사업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인지,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며, 계속사업으로서의 추진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역 내 산업, 경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의 발전 방향을 큰 틀에서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총괄적인 지역 일자리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고용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사업을 연계 및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 전문성 및 인력풀을 활용한다면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사업유형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사업유형 분류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인턴형)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함보다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청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 채용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는 고용장려금의 수단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일

자리 사업유형을 재분류함과 함께 기업부담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내용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자체별 사업관리·운영 주체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사업 운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와 위탁기관과의 상시적·유기적 업무 협력관계와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서는 위탁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기업 연계 및 협력, 청년과의 소통에 유리하며 복수의 수행인원으로 사업장 관리가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 반면, 청탁 등 공정성 저해 가능성, 위탁기관 역량에 따른 성과 차이 및 운영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 관리 소홀시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위탁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위탁의 효율성이다. 위탁기관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에 차이가 클 경우, 사업 추진과 사업관리·감독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위탁기관 운영의 표준화 및 전문성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위탁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사항 중 하나인 전담매니저 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국의 수많은 위탁기관과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 관계 유지를 위해 총괄적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업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 및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 및 관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업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 사업 참여 대상자 공모는 각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지침 내 구체적 명시 사항 없이 청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업 홍보의 일원화된 창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동 사업의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해당하는 공고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런데 동 사업 참여 청년 중 49.2%가 지인을 통해 사업을 인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일반적인 미취업자(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지인을 통한 구직 비율이 5.2%에 그치는 것을 볼 때, 청년들이 동 사업의 정보를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참여 기업 및 청년이 용이하게 정보를 획득·비교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업 운영 주체가 사업체 및 지원자의 풀(pool)을 용이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참여 기업에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한 기지원 청년 중 사업 적합도를 고려하여 곧바로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의 효율성 향상에도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 관리 필요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요한 목표인 '청년의 지역정착' 효과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연결고리가 잘 작동될 때 가능하며, 여기서 '청년의 지역 정착'은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현재 동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가 종료된 이후에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는지의 효과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동 사업의 유형 중 청년의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정착지원형'에서는 청년이 2년간의 사업 기간을 채우고 3개월 내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고용 및 창업의 경우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에서 청년의 지역정착 유인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소이고 현재 사업 체계에서 '정착효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나, 현재 성과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단기적 지역 정착효과를 분석하고 사업 기간 2년 만기에 도래하는 청년의 계속 정주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의 지역 정착'이라는 사업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행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구체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 및 환류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 관리 차원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수행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모니터링 사항과 방식도 서로 달라 사업장 점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점검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하도록 하는 체계는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절차는 아니다. 동 사업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 감독,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통 점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점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 증액 및 감액 등의 환류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물리적 시간 및 인력 제약하에 전국의 1만 7천여 개의 사업장을 점검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크므로,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사업참여 과정에서 참여 기업이 직접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친인척 고용 등 부정수급의 위험이 존재한다. 현재는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적발이 불가한 상태이다. 부정수급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키며 동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 및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는 해당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즉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도 탈락률 개선을 위하여 중도 탈락 원인분석, 탈락자 사후관리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 사업의 중도 탈락률은 2018~2021년간 12.6~20.0%로 나타났는데,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비율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장기 고용 유지율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센티브 수령 비율 또한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중도 탈락 이유에 대해 '기타'라고 응답한 대상이 59~86%로 매우 많았으며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웠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

족이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지역에서 청년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다수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큰 상황을 고려할 때, 중도 탈락 사유가 타 일자리 취업 및 창업이 아닌 이상 근무 여건 및 환경에 대한 불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이 사업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니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이 중도 탈락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조치 및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동우(2019), 특집: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월간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노동부(2021),「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발표, 보도자료 (2021.6.8.)

고용노동부(2022),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관계부처합동(2018),「청년일자리 대책」, 2018.3.15.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

국회예산정책처(2022),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 경제·산업동향 & 이슈, vol.24.

국회입법조사처(2016), "일본 지방창생 전략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기획재정부(2021),「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박진경, 김현호, 김상민, 임태경(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진우(2020),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 일본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논고」, 제68집 (2020.01), pp.145~173.

이상아, 이승윤(2018),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노동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pp.27~59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지역고용동향브리프」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이순태(2011), "시ㆍ군의 통합방법ㆍ절차와 외국 사례-일본의 시정촌 합병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임상연, 변필성(2014),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제492호, 국토연구원

안기돈, 오정일(2006), 우리나라 15개 시·도별 인구이동과 일자리 수 변화 간 인과관계, 이슈페이퍼 2006-216, 산업연구원

정윤선, 윤기확(2019),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9-460,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2년 3조 6,669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보도자료(2022.1.4.)

통계청(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보도자료(2020.6.29.)

한국고용정보원(2021), 청년정책 현황분석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19), 노동시장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한국노동연구원(2021), 제23차(2020)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입법동향과 시사점,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행정안전부(2021),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2021.10.18.)

기업 평균 퇴사율 18%, 1년차 이하 퇴사율 49%로 절반이 퇴사, 리크루트타임스, http://www.recruit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03 2019.7.30.

뽑아 놓으면 금방 퇴사, 중소기업 54.6% “인력 부족”,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727/102167824/1, 2020.7.2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명문기획 / 02-2079-9200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56-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7-001976-0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